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14조 및 제12의정서 제1조에 대한 해설서

차별 금지

2023년 8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publishing@echr.coe.int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전문위원(Jurisconsult)의 승인하에 작성되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은 이번 해설서 초안 작성에 소중한 힘을 보태 준 프랑스 툴루즈 제1대학교(카피톨) 소재 유럽법·국제법·비교법 연구소(IRDEIC)의 마에바 데스포(Maéva Despau)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Case-Law Guides]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목차

목차.....	3
일러두기	5
서문.....	6
I. 적용 범위.....	6
1. 제14조의 부수적 성격.....	6
2. 실체적 조항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 제14조 적용	7
3. 제14조에 명시된 차별 금지의 실질적 범위.....	8
B. 제12의정서 제1조.....	9
II. 차별의 형태	11
A. 직접 차별 및 간접 차별.....	11
B. 연계에 의한 차별	13
C. 적극적 조치	13
D. 기타 차별의 형태	14
III. 차별 심사 기준	15
A. 대우의 차이.....	16
B.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 부재	18
1. 정당한 목적	18
2. 비례성	19
IV. 증명 책임.....	20
A. 원칙: 증명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0
B. 예외: 증명 책임의 전환.....	21
V. 차별의 사유.....	23
A. 성별	23
B. 인종 및 피부색	26
C. 언어.....	29
D. 종교.....	29
E.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31
F.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32
G. 소수(민족)와의 연계	33
H. 재산.....	34
I. 출생	34
J. “기타 상황 ”	35
1. 연령.....	35
2. 젠더 정체성.....	36

3. 성적 지향.....	37
4. 건강 및 장애	39
5. 부모 및 혼인의 상황	41
6. 이민 상황.....	42
7. 고용 관련 상황	42
8. “기타 상황 ”의 추가 예시	43
9. “기타 상황 ” 외 상황의 예시.....	44
VI. 차별의 주제	45
A. 사생활 및 가족생활	45
B. 정치적 권리	46
C. 고용.....	48
D. 사회적 권리	49
E. 이민	50
F. 교육을 받을 권리	51
G. 폭력에 의한 차별	52
1. 실체적 측면.....	53
2. 절차적 측면.....	54
H. 사법 접근	55
I.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	55
J. 재산 사안	56
K. 자유의 박탈.....	57
인용 판례 목록.....	59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14조 및 제12의정서 제1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1월 18일, § 154,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eđ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문

1. 협약 제14조는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을 명시한다.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차별 금지 원칙은 “근본적” 성격을 지니며 법의 지배 및 관용과 사회 평화의 가치와 더불어 협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S.A.S. v. France* [GC], 2014, § 149; *Străin and Others v. Romania*, 2005, § 59). 나아가 이러한 보호는 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12의정서 제1조가 완성한다.

I. 적용 범위

협약 제14조 – 차별 금지

“본 협약에서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HUDOC 주제어

차별(14): 성(14), 인종(13), 피부색(14), 언어(14), 종교(14),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14), 출신 국가(14), 사회계층(14), 소수민족(14), 재산(14), 출생(14), 기타 신분(14)

비교 상황(14)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14)

1. 제14조의 부수적 성격

2. 협약 제14조는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다.

3. 재판소는 제14조가 협약과 의정서의 그 외 실체적 조항을 보완할 뿐이라는 점을 자주 강조하였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23;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3; *E.B. v. France* [GC], 2008, § 47; *Marckx v. Belgium*, 1979, § 32). 즉, 제14조는 차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다. 다시 말하면, 제14조가 명시한 보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Case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the laws on the use of languages in education in Belgium” v. Belgium* (본안)(“*Belgian linguistic case*”), 1968, “the Law” 부분 § 9;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3; *E.B. v. France* [GC], 2008, § 47), 제14조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는 각 조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Belgian linguistic case*, 1968, “the Law” 부분 § 9; *Marckx v. Belgium*, 1979, § 32; *Inze v. Austria*, 1987, § 36). 실제로 재판소는 항상 협약 내 다른 실체적 조항과 결합하여 제14조를 검토한다.

4. 그러나 제14조의 부수적 성격은 실체적 조항 위반이 있어야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하기 제I.A.2절 참조). 또한, 제14조의 실질적 적용 범위를 실체적 조항의 범위가 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하기 제I.A.3절 참조). 따라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제14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고용(*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2004; *Bigaeva v. Greece*, 2009)
- 노동 조합 가입(*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2009; *Zakharova and Others v. Russia*, 2022)

- 사회보장(*Andrejeva v. Latvia* [GC], 2009; *Gaygusuz v. Austria*, 1996; *Koua Poirrez v. France*, 2003; *Stummer v. Austria* [GC], 2011)
- 교육(*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Ponomaryovi v. Bulgaria*, 2011)
-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Buckley v. the United Kingdom*, 1996; *Karner v. Austria*, 2003)
- 사법 접근(*Paraskeva Todorova v. Bulgaria*, 2010;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2005; *Anakomba Yula v. Belgium*, 2009)
- 상속권(*Fabris v. France* [GC], 2013)
- 자녀 면접교섭(*Sommerfeld v. Germany* [GC], 2003)
- 친자확인(*Rasmussen v. Denmark*, 1984)
-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 효과적인 조사를 받을 권리(*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Opuz v. Turkey*, 2009; *B.S. v. Spain*, 2012)
- 가석방 적격성(*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2017)
- 세제 혜택 적격성(*Guberina v. Croatia*, 2016).

2. 실체적 조항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 제14조 적용

5. 협약에서 보장하는 실체적 권리 중 하나가 위반되어야 실체적 조항과 결합하여 해석한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3; *E.B. v. France* [GC], 2008, § 47), 이 범위 내에서는 제14조는 독자적이다(*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2004, § 38).

6. 따라서, 재판소는 실체적 권리 그 자체를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4조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다(*Sommerfeld v. Germany* [GC], 2003; *Marckx v. Belgium*, 1979; *Belgian linguistic case*, 1968, “the Law” 부분 § 4).

7. 제14조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이러한 상대적 독자성의 존재는 몇 가지 절차적 결과를 낳았다. 재판소는 먼저 실체적 조항 위반 혐의를 다룬 후, 실체적 조항과 결합하여 해석한 제14조 위반 혐의를 별도로 다루기도 하였다(*Marckx v. Belgium*, 1979; *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Aziz v. Cyprus*, 2004; *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재판소가 제14조와 결합하여 해석한 실체적 조항의 위반을 판단한 후 해당 실체적 조항의 위반을 단독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기도 하였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Rangelov v. Germany*, 2012; *Andrejeva v. Latvia* [GC], 2009; *Barrow v. the United Kingdom*, 2006;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2004; *Rasmussen v. Poland*, 2009).

8. *Emel Boyraz v. Turkey*, 2014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건의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해석할 권능이 있는 재판소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제8조(§ 33)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장은 제8조와 결합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기까지 하였다.

9. 이와는 반대로, 이미 협약의 실체적 조항에 대한 별도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재판소가 제14조에 따라 사건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Dudgeon v. the United Kingdom*, 1981 사건에서, 재판소는 일반적인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건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된 권리 향유에 있어 명백히 불평등한 대우가 사건의 근본적 측면인 경우에는 입장이 달랐다(§ 67; 또한 *Norris v. Ireland*, 1988;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V.C. v. Slovakia*, 2011 참조).

3. 제14조에 명시된 차별 금지의 실질적 범위

10. 제14조 적용의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속하는 범위가 하나 이상의 협약 조항으로 넓어지는 것이다(*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3; *E.B. v. France* [GC], 2008, § 47;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4;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2004, § 38). 따라서, 실제적 조항과 결합하여 해석된 제14조 적용의 실질적 범위는 실제적 조항의 실질적 적용 범위만으로 축소될 수 없다.

11. 그 결과, 재판소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호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협약 조항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이러한 추가적인 권리에 도 차별 금지 적용을 분명히 하였다(*Fábián v. Hungary* [GC], 2017, § 112; *Biao v. Denmark* [GC], 2016, § 88;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2016, § 158;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3; *E.B. v. France* [GC], 2008, § 48; *X and Others v. Austria* [GC], 2013, § 135; *Genovese v. Malta*, 2011, § 32; *Beeckman and Others v. Belgium* (dec.), 2018, § 19).

12. 재판소는 이러한 “추가적 권리” 개념에 대한 여러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한 가지 예로 협약 제6조는 국가가 항소 법원 제도를 설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항소 법원을 설치하는 국가는 제6조에 따른 의무 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 유형의 소송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공하는 이러한 유형의 구제 수단을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제14조와 결합하여 해석된 제6조제3항제(d)호에 위배된다(*Belgian linguistic case*, 1968, “the Law” 부분 § 9).

13. 이렇게 되려면 차별 금지 요건이 적용되는 법익이 실제적 조항 범위에 해당하거나(*Zarb Adami v. Malta*, 2006, § 49), 실제적 조항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와 관련이 있거나(*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9), 실제적 조항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Van der Musselle v. Belgium*, 1983, § 43).

14. 따라서 재판소는 실제적 권리와 결합하여 해석된 제14조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동성애자 편부모가 자녀를 입양할 권리(*E.B. v. France* [GC], 2008, § 43), 육아 휴직 및 육아 수당(*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30), 시민권 거부(*Genovese v. Malta*, 2011) 등의 권리는 제14조와 결합된 제8조의 범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한 제14조는 다양한 복지 혜택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Stummer v. Austria* [GC], 2011, § 82;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 53;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4–65; *Andrejeva v. Latvia* [GC], 2009, § 77; *Fábián v. Hungary* [GC], 2017, § 117; 또한 이와 반대로 수감자는 교도소 내 노역에 법정 최저 임금의 절반 이상을 받는다는 정당한 기대가 없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Dobrowolski and Others v. Poland* (dec.), 2018 사건 참조).

15. 재판소는 신체적, 민족적 동기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주장된 신원확인이 “사생활(private life)”의 측면에서 제8조의 위반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제14조의 적용을 유도해내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절차적 의무의 범위를 밝혔다. 재판소는 관계인이 자신(또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람)만이 유일한 조사 대상자이고 다른 조사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찰관의 설명에서 특정한 신체적, 민족적 동기가 밝혀진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조사의 공개성이 개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Muhammad v. Spain*, 2022, § 50, *Basu v. Germany*, 2022, § 25).

16. 재판소는 제14조의 “수평적 효과(horizontal effect)”를 지적하였으며, 이는 차별 금지 원칙이 순전히 사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재판소는 유언에 의한 처분, 사적 계약, 공문서, 법령 조항 또는 행정 관행 등 법률 행위에 대한 국내 법원의 해석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거나 제14조에 정식으로 기술된 차별 금지 및 더 넓게는 협약의 기본 원칙과 노골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Pla and Puncernau v. Andorra*, 2004 사건에서 국내 재판소는 개인의 유언을 해석하며 유언자가 입양 자녀는 유산 수령인에 포함시키지 않기를 바랐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제8조와 결합한 제14조는 단순히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자의적 간섭을 삼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소극적인 말은 바 외에도 사생활 또는 가족 생활에 대한 효과적인 “존중”에 내재된 적극적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9).

17. 계약국이 사적 당사자 간 차별을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2009 사건에서 러시아는 고용자가 해고한 파업 중인 피고용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가해진 차별에도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18. 국가 대리인 또는 사인(私人)이 폭력을 통해 차별한 사건인 경우, 국가 당국은 차별적 동기가 있었는지, 개인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증오나 편견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조사해야 한다(*Abdu v. Bulgaria*, 2014, § 44; *Milanović v. Serbia*, 2010, § 90).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2007 사건에서는 정교회 지지 표명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 집회를 급습하였으나 효과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성애 혐오 폭력으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하지 않고 효과적인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국가는 차별 금지 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19. 마지막으로, 직장인 엄마에 대한 젠더 차별을 인정하는 판결 미집행(*García Mateos v. Spain*, 2013), 육아휴직권에서 차별 당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 거부(*Hulea v. Romania*, 2012), 제14조 위반이라는 재판소의 판결 미집행(*Sidabras and Others v. Lithuania*, 2004)도 모두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다.

B. 제12의정서 제1조

제12의정서 제1조 – 차별의 일반적 금지

“1. 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향유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2. 누구라도 제1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유로 공권력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HUDOC 주제어

차별 금지(P12-1)

20.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12의정서 제1조는 차별에 대한 보호 범위를 “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로 확장한다. 따라서 이 의정서는 차별의 일반적 금지(*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2010, § 103;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53) 및 차별 받지 않을 “독립적인 권리”를 도입하였다.

21. 재판소는 협약 제14조와 제12의정서 제1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개념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¹(*Pilav v. Bosnia and Herzegovina*, 2016, § 40;

¹ 차별의 개념 정의는 아래 “차별의 형태”를 참조한다.

Zorn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14, § 27;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55–56).

22. 재판소는 제12의정서 제1조를 해석하며 해당 보호 범위를 “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넘어 그 이상으로 확장한다(*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2010, § 104). 이는 제1조제2항으로 이어져, 누구도 공권력에 의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12의정서 설명보고서에 따르면, 제1조의 보호 범위는 다음 네 가지 범주에서, 특히 “개인이 차별 받는 경우”와 관련된다.

1. 국내법에 따라 개인에게 확실하게 한정하여 부여된 모든 권리의 향유
2. 국내법상 공권력의 명확한 의무, 즉 공권력이 국내법에 의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추론되는 권리의 향유
3. 공권력의 재량권 행사(예: 일정한 보조금 부여)
4. 공권력의 그 외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예: 폭동 진압 시 법집행관의 행동)” (설명보고서, § 22)

23. 설명보고서는 나아가 “이 네 가지 요소 중 어떤 것이 제1조제1항에, 어떤 것이 제2항에 포함되는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이 두 항은 상호보완적이며, 두 항을 합치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제1조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각 범주 간 구분은 ... 뚜렷하지 않으며, 어떤 사건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국내법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23).

24. 따라서, 제12의정서 제1조의 적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해당 청구가 설명보고서에 언급된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2010, §§ 104–105).

25. 설명보고서는 나아가 제12의정서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만, “제1조는 사인(私人) 간의 관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별 방지 수단 채택 의무를 당사국들에게 부과한다(이른바 ‘간접적 수평 효과’)”(§ 24). 예를 들어, “일자리에 대한 접근, 식당에 대한 접근 또는 의료, 수도·전기 등 공익설비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자의적 거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아직 이러한 맥락에서 제12의정서 제1조를 적용할 기회가 없었다.

26. 제12의정서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인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에서 재판소는 각각 출신이 로마족과 유대인이라고 밝힌 청구인들이 헌법 조항의 요건에 따라 “구성 민족”(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에 속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하원 및 국가 대통령직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는지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국가 대통령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헌법 조항이 제12의정서 제1조에 의거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27. *Napotnik v. Roman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임신한 여성 외교관의 해외 파견 조기 종료가 공권력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는 제12의정서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57). *Moraru and Marin v. Roman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2의정서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퇴직 연령에 도달한 여성 공무원이 남성에게 대한 퇴직 연령에 이르기까지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국내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거나 공권력의 명확한 의무에서 추론되는 권리와 관련있다고 판단하였다.

28. *Ádám and Others v. Roman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2의정서에 따라 헝가리 소수민족의 고등학교 졸업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한 차별 진정을 검토하였다. 청구인들은 같은 기간 동안 루마니아 민족보다 더 많은 시험을 치러야 하고(헝가리어 시험 2회), 루마니아어 시험은 모국어가 아니어서 어려웠다고 항의하였다. 재판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졸업 시험인 바칼로레아 일정이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거나 청구인들의 휴식 시간이 루마니아 학생들의 평균보다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지만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겪은 불편이 협약 제12의정서 제1조의 기준선에 다다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29. *Pinkas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업무 관련 수당에 관한 사법 서기와 판사 사이의 처우 차이가 공공기관에 의한 차등 대우라는 점에서 제12의정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0. *Paun Jovanović v. Serbia*,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법원의 절차에서 세르비아어의 변형인 이제카비아어를 사용할 권리가 법으로서 보장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동안 해당 언어를 사용할 기회가 부인되었다면 해당 차별 주장에 대하여 제12의정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61)².

31. 현재까지 제12의정서(2000년 11월 4일 서명 개시, 2005년 4월 1일 발효)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중 20개국에 비준하였다.³ 따라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심사한 사건은 소수에 불과하다.

II. 차별의 형태

A. 직접 차별 및 간접 차별

32. 제14조는 직접 차별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지 않았다. “직접 차별”이라는 표현은 “유사하거나 타당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대우의 차이”를 말하며, “식별할 수 있는 특징 또는 ‘상황’에 근거”(Biao v. Denmark [GC], 2016, § 89;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1;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75;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60)하고, 협약 제14조로 보호된다(Varnas v. Lithuania, 2013, § 106; Hoogendijk v. the Netherlands (dec.), 2005). 따라서 이 조항의 요건은 유사한 상황 처한 사람들을 동등한 방식으로 대우하라는 것이다(ibid.).

33. *Alexandru Enache v. Romania*, 2017 사건을 예로 들면,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범죄자라면 자녀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형기 시작일을 연기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남성으로서 그러한 가능성에서 제외되어 성별에 따라 직접 차별이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Ēcis v. Latvia*, 2019 사건에서 폐쇄형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 재소자에 대한 전면적인 귀휴 금지 조치는 성별을 사유로 제8조와 결합한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4. 괴롭힘과 차별 지시는 직접 차별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소는 괴롭힘과 차별 지시 사건은 일례를 들자면 평화 집회권에 관한 제11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해당 사건에서 바르샤바 시장은 성적 지향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목적의 행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동성애 혐오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관련 행정 기관에 해당 결정이 제기되자 시위대 간 충돌 방지가 필요하다는 등 다른 사유를 들어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재판소는 시장의 발언이 관계 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성적 지향에 근거한 결정이었으므로 제11조와 결합된 협약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Oganezova v. Armenia*, 2022 사건은 아르메니아 LGBT 커뮤니티의 한 유명 회원에 대한 공격적인 동성애 혐오 캠페인과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해당 여성이 공동 소유한 주점(酒店)을 방화 공격하며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 후 몇 주 동안 해당 여성과 직원들은 주점 밖에 모인 사람들로 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² 또한 아래 “언어” 를 참조.

³ 조약 177 서명 및 비준표(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7)를 참조.

주점은 파손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 정치인들은 방화 공격 가해자들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편협한 발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또한 온라인 증오 발언 등 살해 위협과 학대로 시달렸고, 결국 아르메니아를 영원히 떠나 스웨덴에 망명을 신청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이 해당 청구인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35. 간접 차별은 중립적인 용어로 포장했지만 특정 집단을 특히 차별하는 일반 정책 또는 수단이 비례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일 수 있다(*Biao v. Denmark* [GC], 2016, § 103;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84; *Sampanis and Others v. Greece*, 2008, § 67). 해당 정책 또는 수단이 특정 집단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거나 지향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당 집단을 차별할 수 있다(*Hugh Jordan v. the United Kingdom*, 2001, § 154; *Hoogendijk v. the Netherlands* (dec.), 2005). 간접 차별에 반드시 차별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Biao v. Denmark* [GC], 2016, § 103;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84). 또한, 간접 차별은 중립 규칙(*Hoogendijk v. the Netherlands* (dec.), 2005), 사실상 존재하는 상황(*Zarb Adami v. Malta*, 2006, § 76) 또는 정책(*Tapayeva and Others v. Russia*, 2021, § 112)으로 발생할 수 있다.

36.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사건에서는, 해당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많은 수의 로마족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 학교에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및 그로 인해 해당 아동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재판소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일반 정책 또는 조치”는 학습 장애 아동을 일반 학교에 배치할지 “특수” 학교에 배치할지 결정하기 위해 아동의 지적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체코의 주류 인구를 염두 하여 설계되었으며, 결과를 분석할 때 로마족 아동의 특수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성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로마족 아동이 체코 민족 출신 아동에 비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많은 수가 “특수 학교”에 배치되는 간접 차별이 발생하였다(§§ 200-201).

37. *Biao v. Denmark* [GC], 2016 사건에서, 덴마크에 거주하는 토고 출신 덴마크 귀화 시민인 남편과 가나인 아내인 청구인은 덴마크에서의 가족 재결합 요청이 법적 요건 미준수로 거부되었다고 제소하였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덴마크와의 총체적인 유대 관계가 타국에 대한 애착보다 강하거나 덴마크 시민권을 최소 28년 간 보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가족 재결합을 허가한다. 재판소는 관련 규칙이 덴마크 국적의 덴마크 시민과 비(非)덴마크 국적의 덴마크 시민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유럽국적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과 확실히 유럽 표준을 지향하는 추세를 언급하며, 재판소는 가족 재결합 허가 조건을 결정할 때 출생 국민과 귀화자 외 비(非)출생 국민을 구별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은 후천적 덴마크 국적 취득자나 비덴마크 타민족 출신에게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편파적인 영향을 미쳤다.

38. 간접 차별의 또 다른 예시는 *Zarb Adami v. Malta*, 2006 사건이다. 당시 몰타법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남녀 모두 배심원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였다. 문제가 된 차별은 배심원 명단 작성 방식과 배심원 봉사 면제 기준 등 여러 요인을 특징으로 확립된 관행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결과, 배심원 요청을 받는 여성의 비율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었다(§ 75).

39. 여성 대상 폭력과 관련된 *Opuz v. Turkey*, 2009 사건에서 당시 시행되던 튀르키예법은 권리와 자유의 향유 또는 사법 접근에서 남녀를 노골적으로 구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해당 사건 내 차별은 법률 자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정 폭력 사건을 신고한 여성을 경찰서에서 대우하는 방식,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사법적 소극성 등 현지 당국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192).

40. *S.A.S. v. France* [GC], 2014 사건에서 재판소는 프랑스법이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가리도록 고안된 의복 착용을 누구에게나 금지하여 종교적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전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자 하는 무슬림 여성의 상황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였다(§ 161).

B. 연계에 의한 차별

41. 재판소는 제14조가 연계에 의한 차별, 즉 문제의 보호 사유가 청구인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Guberina v. Croatia*, 2016, § 78; *Škorjanec v. Croatia*, 2017, § 55; *Weller v. Hungary*, 2009, § 37).

42. *Guberina v. Croatia* 사건에서 크로아티아 당국은 장애 아동의 아버지가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부동산 구매 시 세금 감면 자격을 결정할 때 장애 자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자녀에게 장애가 있으므로 그 아버지를 차별 대우한 것은 장애에 기반한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Škorjanec v. Croatia*, 2017 사건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로마족 파트너는 로마족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두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재판소는 인종차별적 태도와 특정 폭력 행위 간 연결성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 당국의 의무는, 제14조와 결합된 제3조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책임의 일부이며, 특정 신분 또는 요보호 특성이 실제로 있거나 있다고 추정되는 타인과의 연계나 소속이 실제로 있거나 있다고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 행위와도 관련된다고 강조하였다.

43. 대재판부가 연계에 의한 차별 원칙을 최초로 적용한 *Molla Sali v. Greece* [GC],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한 개인을 타인의 신분 또는 요보호 특성을 사유로 덜 유리하게(less favourably) 대우하는 경우에도 협약 제14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34).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여 샤리아법이 상속 분쟁에 적용된 해당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언자의 아내인 청구인이 아니라 유언자의 이슬람 신앙을 고려한 대우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C. 적극적 조치

44.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제14조는 회원국이 집단 간의 “사실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실제로 특정 상황에서는 차등 대우로 그러한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14조 위반이 될 수 있다(*Taddeucci and McCall v. Italy*, 2016, § 81;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2012, § 388;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44; *Muñoz Díaz v. Spain*, 2009, § 48;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75;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 51; *Thlimmenos v. Greece* [GC], 2000, § 44; *Belgian linguistic case*, 1968, “the Law” 부분 § 10).

45. 예를 들어, 협약기구들은 기존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남녀 간 대우에서 차이를 초래하는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Andrle v. the Czech Republic*, 2011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녀를 양육한 남성의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여성과 달리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며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여성이 종일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와 가정도 돌본다는 기대치로 인한 어려움과 불평등(통상 낮은 급여와 연금 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문제의 불평등 시정 수단으로서 시기와 정도가 불합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협약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Lindsay v. the United Kingdom*, 1986 사건 위원회 결정에서, 아내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적인 과세 혜택이 발생하는 조세 조항은 그러한 대우 차이가 직장 기혼 여성에게 유리한 적극적 차별을 제공한다는 방향목표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므로 국가 당국에 허용된 재량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46. 제14조는 국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 없이 명백하게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지 못하면 적용될 수 있다(*Abdu v. Bulgaria*, 2014;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 87; *Pretty v. the United Kingdom*, 2002, § 88; *Thlimmenos v. Greece* [GC], 2000, § 44). 따라서 재판소는 회원국의 책무인 차별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와 더불어 차별을 방지, 중지 또는 처벌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할 수도 있는 특정 상황이 있다고도 판단하였다(*Pla and Puncernau v. Andorra*, 2004, § 62). 회원국의 책무인 적극적 의무는 이른바 “적극적 수단”(Horváth and Kiss v. Hungary, 2013, § 104), 즉 국가가 “사실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역차별,” “적극적 조치” 또는 “차별 철폐 조치”를 포함한다.

47. 예를 들어, *Thlimmenos v. Greece* [GC], 2000 사건에서 그리스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 중 군복 착용을 거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공인회계사 임명이 거절되었다. 재판소는 국가가 오로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구별했어야 하므로 제9조와 결합하여 해석된 제14조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Abdu v. Bulgaria*, 2014 사건에서 재판소는 인종차별로 의심되는 태도가 유발한 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인종차별적 동기에 의한 폭력과 잔인성을 인종차별적 함의가 없는 사건과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하면 인간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없다면 협약 제14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44). 로마족 아동을 헝가리 내 특수 학교에 조직적으로 배치한 *Horváth and Kiss v. Hungary*,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육에서 차별을 겪었고 그 영향이 계속되는 집단 구성원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맥락에서,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들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수단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회 서비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등 몇 가지 추가 조치가 필요하였다. *Elmazov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 측의 차별적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로마족 학생들을 분리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로마족이 아닌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대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77-78). *Çam v. Turkey*, 2016 사건에서는 한 음악 학원이 시각 장애를 이유로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2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예: 시각장애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수법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Selygenenko and Others v. Ukraine*, 2021 사건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크림반도와 도네츠크에서 온 국내 실향민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충분한 수단을 취하지 않아 차별한 것으로 밝혀졌다.

D. 기타 차별의 형태

48. 재판소는 여러 가지 근거가 개별적으로 작용하거나 동시에 상호 작용하여 발생한 차별 상황도 심사하였다.

49. 협약 제14조와 제12의정서 제1조는 둘 다 다수의 사유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근거가 두 가지 이상인 청구도 이론상 가능하다. 나아가 제14조의 차별 사유 목록은 대략적이므로 재판소가 확장하여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유도 포함시킬 수 있다.

50. 예를 들어 공립 병원에서 로마족 여성에게 강제 불임시술을 한 *N.B. v. Slovakia*, 2012 사건에서 청구인은 분명 두 가지 이상의 사유(인종/민족 출신 및 성(性))로 차별받았다고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에게 불임 시술을 하는 관행은 다양한 민족 집단 출신의 취약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96).

재판소는 협약 제3조 및 제8조의 위반으로 판결하였지만 제14조에 따른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51. *B.S. v. Spain*, 2012 사건에서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여성 성 노동자가 스페인 경찰이 인종, 성별, 직업을 사유로 자신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스페인 법원의 결정이 아프리카 성매매 여성이라는 청구인의 지위에 내재된 현저한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62), 제3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52. 또 다른 예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게 한 *S.A.S. v. France* [GC], 2014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금지 조치가 종교적 사유로 공공장소에서 전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자 하는 무슬림 여성의 상황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였지만, 해당 수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제9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Yocheva and Ganeva v. Bulgar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미혼모)의 자녀를 자녀의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가족 수당(통상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지급)을 지급하지 않자 성별과 가족 상태 모두를 사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결하였다.

53. *Carvalho Pinto de Sousa Morais v. Portugal* (2017) 사건은 의료 과실로 성관계 불능이 된 여성 피해자에게 초기 지급했던 비금전적 손해배상을 줄이기로 한 결정에 관한 것이다. 포르투갈 최고행정법원은 해당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수술 당시 이미 50세로 자녀도 둘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였다. 그 나이에는 성 능력이 젊은 시절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면서 그 중요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생각하면 이제 청구인은 내조에만 힘쓰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스트라스부르 재판소는 나아가 앞서 두 명의 남성 환자(55세, 59세)가 제기한 두 건의 의료 과실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남성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으로 강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았을 때 청구인의 나이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가 지적하듯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문제는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50세 여성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에게 성 능력은 젊은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여성의 성 능력이 본질적으로 자녀 생산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한 인간으로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성 능력의 신체적, 심리적 관련성을 무시하였다.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것 외에도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여성의 성 능력에 존재하는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최고행정법원은 청구인의 구체적 사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정을 한 것이다(§ 52). 재판소는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의 위반을 밝히면서, 청구인의 연령과 성이 최종 결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사유로 대우에 차이가 생겼다고 결론지었다.

III. 차별 심사 기준

54. 대우에 차이를 두거나 상당히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차별은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별이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35; *Fabris v. France* [GC], 2013, § 56;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75; *Hoogendijk v. the Netherlands* (dec.), 2005).

55. 차별 사건을 결정할 때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1. 유사하거나 타당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대우의 차이가 있었거나 타당할 정도로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지 못하였는가?
2. 그런 경우 그러한 차이 또는 차이의 부재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가? 특히,

- a.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가?
- b. 사용된 수단이 추구하는 목적에 합리적으로 비례하는가?

A. 대우의 차이

56. 우선, 제14조에 따라 제소할 때 청구인은 자신이 타당할 정도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 또는 집단과 다른 대우를 받았거나 타당할 정도로 다른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 또는 집단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청구인이 비교되는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을 “비교 대상”이라고 한다.

57.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사건에서, 국가 연금의 물가 연동에 대한 자격 부여를 관장하는 영국법에 따라 연금 수령자가 영국 또는 영국과 연금 상황 조정에 관한 상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이 물가 연동된다는 사실에 따라 차등 대우가 존재하였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는 기본 국가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영국을 떠난 날짜 기준으로 요율로 동결되었다. *Varnas v. Lithuania*, 2013 사건에서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던 수감자는 아내의 부부 접견이 거부된 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는 부부 접견이 허용되었다. *Cusan and Fazzo v. Italy*, 2014 사건에서 이탈리아 법에 따라 부부는 친생자에게 아내의 성이 아니라 남편의 성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따라 차등 대우가 존재하였다. *Fabris v. France* [GC], 2013 사건에서는 상속 과정에서 혼인 외 출생자는 사망한 부모의 재산에서 혼인 중 출생자가 받는 몫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었다.

58. 사건 당사자들은 대우에 차이가 있는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B. v. France* [GC], 2008 사건에서 정부는 동성애 여성의 입양을 허용하지 않은 사유는 성적 지향이 아니라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프랑스법이 원칙적으로 미혼 여성의 입양을 허용하며 프랑스 당국이 청구인이 “사는 방식”을 근거로 입양 거부를 결정했다고 판단하였다(§ 88). *Karlheinz Schmidt v. Germany*, 1994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남성만 소방대원으로 복무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남녀를 다르게 대우한다고 제소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러한 복무 의무는 이론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아무도 소방대원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우의 실질적 차이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대원으로 복무할 의무가 아니라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재정적 부담이었다(§ 28). *Hoffmann v. Austria*, 1993 사건에서, 재판소는 오스트리아 법원이 남편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기로 한 결정은 상당 부분 청구인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다고 인정하였다.

59. 제14조 상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유사하거나 타당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에 차이가 있어야만 한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33; *Fábián v. Hungary* [GC], 2017, § 113; *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2017, § 64; *X and Others v. Austria* [GC], 2013, § 98;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5; *Marckx v. Belgium*, 1979, § 32;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60;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75; *Zarb Adami v. Malta*, 2006, § 71; *Kafkaris v. Cyprus* [GC], 2008, § 160). 즉, 유사한 입장임을 입증하는 요건 상 비교 집단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청구인은, 본인 소송의 특수성을 유념하면서, 다르게 대우 받은 타인들과 타당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Fábián v. Hungary* [GC], 2017, § 113; *Clift v. the United Kingdom*, 2010, § 66; *Demokrat Parti v. Turkey* (dec.), 2021).

60. 이제 재판소는 서로 다른 상황임을 규정하고 상황의 비교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주제, 논란이 된 조항의 목적 및 차별 혐의가 발생하고 있는 맥락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Fábián v. Hungary* [GC], 2017, § 121; “승인된 지자체 수렴인 협회 설립일에 존재가 인정된” 지주 협회 및 그 이후 설립된 지주 협회 간 대우 차이에 대한 권고적 의견, 2022). 차등 대우와 차별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두 개인 또는 집단이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평가하려면 구체적이고 맥락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요소에만 근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상황은 전체 분석이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단발적이거나 무의미한 측면을 피하면서 총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ibid.*).

61. 예를 들어 재판소는 부부 접견(*Varnas v. Lithuania*, 2013)과 장기 접견(*Chaldayev v. Russia*, 2019; *Vool and Toomik v. Estonia*, 2022)과 관련하여 유치 중인 수감자와 기결수가 비교할 만한 입장이며, 육아 휴직(*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징역형 정책(*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2017), 징역형 집행 연기(*Alexandru Enache v. Romania*, 2017)에서 남녀도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다.

62. *Yocheva and Ganeva v. Bulgar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아 한부모 가족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거부된 청구인이 자녀의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 혼인 중 자녀를 낳고 남편을 잃은 아내 및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 전 자녀를 인정한 미혼모와 타당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들의 사건에서 나타난 대우의 차이는 해당 법률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족은 반드시 두 명의 법적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매우 전통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정관념에 근거하였다.

63. 동시에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한 국가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는 연금의 물가 연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와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음(*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동거하는 자매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배우자 또는 시민 동반자와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음(*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공무원으로 고용된 연금 수급자는 연금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 고용된 연금 수급자(*Fábián v. Hungary* [GC], 2017) 또는 공공 부문 내 범주가 다른 연금 수급자(*Gellértheygi and Others v. Hungary* (dec.), 2018)와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음.
- 사회부담금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해당 부담금의 소급 환급과 관련하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던 사람들과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음(*Frantzeskakis and Others v. Greece* (dec.), 2019).
-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음(*Špoljar and Dječji vrtić Pčelice v. Croatia* (dec.), 2020, §§ 40–44).
- 장애 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연금 재계산 가능성과 관련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와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음(*Milivojević v. Serbia* (dec.), 2022).
- 체포하려는 경찰을 때린 여성은 민간인을 때린 사람과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음(*P.W. v. Austria*, 2022).

64. 대우에 차이가 있거나 다르게 대우하지 않은 것은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연계에 의한 차별 등 상기 설명한 어떤 형태의 차별도 초래할 수 있다. 연계에 의한 차별의 경우, 비교 대상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Guberina v. Croatia*, 2016, § 78; *Škorjanec v. Croatia*, 2017, § 55; *Weller v. Hungary*, 2009, § 37).

65. 예를 들어, *Molla Sali v. Greece* [GC],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무슬림 기혼 여성이 무슬림 남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된 상황을 다루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의 상황을 무슬림이 아닌 기혼 여성이 무슬림이 아닌 남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된 상황과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소는 무슬림 유언자가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겪은

대우의 차이를 무슬림이 아닌 유언자가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상속인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134).

66. 마지막으로 대우의 차이가 생긴 근원은 국내 법제(*Ēcis v. Latvia*, 2019), 국가 법원이 결정의 동기가 되도록 사용한 어휘(*Carvalho Pinto de Sousa Morais v. Portugal*, 2017) 또는 심지어 순수하게 사적인 조치(*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2015)일 수 있다.

B.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 부재

67. 관할 당국은 다른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법적 해법도 달라야 한다. 또한 특정한 법적 불평등은 오로지 사실상의 불평등 시정을 겨냥한다(*Belgian linguistic case*, 1968, “the Law” 부분 § 10).

68. 따라서 제14조는 본질적으로 다른 실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하고, 공익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이익 보호와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자유에 대한 존중 간 공정한 균형을 이루는 대우의 차이는 금지하지 않는다(*G.M.B. and K.M. v. Switzerland* (dec.), 2001; *Zarb Adami v. Malta*, 2006, § 73).

69. 재판소의 표현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 없이”, 즉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거나 사용된 수단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간 합리적인 비례성 관계가 없는 경우 대우에 차이가 있다면 차별이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35; *Fábián v. Hungary* [GC], 2017, § 113; *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1985, § 72; *Belgian linguistic case*, 1968, “the Law” 부분 § 10). 따라서, 재판소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 이른바 “비례성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첫째,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검토하고(아래 제1절), 둘째, 대우의 차이에서 좁은 의미의 비례성을 확인한다(아래 제2절).

1. 정당한 목적

70.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는 우선 쟁점이 되는 수단의 근거를 “정당한 목적”에 두어야 한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35; *Fabris v. France* [GC], 2013, § 56). 또한, 추구하는 목적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등 대우 간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가족 결합을 유지하려는 목적과 남편의 이름을 기반으로 한 가족 성(姓)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으므로 기혼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정당화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Ünal Tekeli v. Turkey*, 2004, § 66).

71. 재판소는 제14조 적용에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언어적 통일성을 개발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달성(*Belgian linguistic case*, 1968)
- 완료된 상속 계약의 법적 확실성(*Fabris v. France* [GC], 2013)
- 평화 회복(*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45)
- 국가 안보 보호(*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37)
- 기회 균등 증진에 오롯이 특화된 공공 서비스 제공 및 모든 피고용자에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행동 방식 요구(*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 105)
- 심각한 정치·경제·사회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 유지 및 부채 구조조정(*Mamatas and Others v. Greece*, 2016, § 103)
- 비행소년 사회복귀 촉진(*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2017, § 80)
- 교도소 환경에서 젠더 기반 폭력, 학대, 성희롱으로부터 여성 보호(*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2017, § 82)

- 환경 보호(“승인된 지자체 수렵인 협회 설립일에 존재가 인정된” 지주 협회 및 그 이후 설립된 지주 협회 간 대우 차이에 대한 권고적 의견, 2022)

72. 재판소는 정부가 근거하는 일부 목적은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피청구국에 공식 등록된 거주자에게만 교회세를 면제하는 수단은 비거주자에 대한 감세는 거주자 감세만큼이나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고 비거주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려면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는 사유로 정당한 목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Darby v. Sweden*, 1990, § 33).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의 전통, 일반적인 가정 또는 사회 전반의 인식을 언급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Ünal Tekeli v. Turkey*, 2004, § 63;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7).

73. 전통적인 가족 지원 및 장려라는 목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재판소는 이전 판례에서 이러한 목적이 그 자체로 정당하거나 심지어 칭찬의 대상이며(*Marckx v. Belgium*, 1979, § 40), 대우 차이를 원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았지만(*Karner v. Austria*, 2003, § 40), 현 상황에서 협약을 해석하는 최근 판례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다소 수정하였다. 그 결과, 재판소는 전통적인 의미로 가족 보호라는 방향목표는 “다소 추상적”이며(*X and Others v. Austria* [GC], 2013, § 139) 일부 상황에서만 정당하다고 보았다(*Taddeucci and McCall v. Italy*, 2016, § 93). 예를 들어 *Bayev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동성 커플 간 관계를 “가족 생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일반화되는 점을 참작할 때, 가족의 가치를 사회의 기반으로 유지하는 것과 동성애의 사회적 수용 인정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여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74. 마지막으로,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한 목적은 일정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장치가 수단을 시행하는 단계별로 존재하고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이다. 예를 들어,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별도 학급에 임시 배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협약 제14조가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학급 배치가 아동의 특수성에 맞추어 교육제도를 조정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수단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이거나 심지어 전적으로 특정 민족 집단 구성원을 향한다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 157).

2. 비례성

75. 정당한 목적을 수립했다면 재판소는 대우의 차이가 공동체 이익 보호와 개인의 권리 및 자유 존중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Belgian linguistic case*, 1968, “the Law” 부분 § 10). 따라서 재판소는 사용되는 수단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요구한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35; *Fabris v. France* [GC], 2013, § 56; *Mazurek v. France*, 2000, §§ 46 및 48; *Larkos v. Cyprus* [GC], 1999, § 29).

76. 재판소의 역할은 그 밖의 점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차이가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관할 국가 당국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 재량의 범위는 상황, 주제, 사건의 배경에 따라 다르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36; *Stummer v. Austria* [GC], 2011, § 88;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60;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1).

77. 한편, 재판소는 국가의 재량이 다소 넓은 영역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자국 사회와 그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국가 당국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근거에서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재판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재판소는 합리적인 토대가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 선택을

전반적으로 존중할 것이다(*Belli and Arquier-Martinez v. Switzerland*, 2018, § 94; *Mamatas and Others v. Greece*, 2016, §§ 88–89; *Stummer v. Austria* [GC], 2011, § 89; *Andrejeva v. Latvia* [GC], 2009, § 83;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60;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 52;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1). 사회 전략의 일반적 수단(*Belgian linguistic case*, 1968, “the Law” 부분 § 10) 및 재산(*Chabauty v. France* [GC], 2012, § 50)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78. 반면 재판부는 그러한 재량이 줄어드는 특정한 차별 사유도 밝혔다. 실제로 재판소는 다원주의 및 다양한 문화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민족 출신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또는 결정적으로 근거한 대우 차이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판결하였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76;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43–44). 마찬가지로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는 매우 중대한 사유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1985, § 78;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7; *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 97).

79. 협약 내 다른 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별 사건에서 국가의 재량을 정의하기 위해 재판소가 사용하는 기준으로 문제된 사안에 대한 체약국 간 합의의 존재 및 그 정도가 있다. 협약은 무엇보다도 인권 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재판소는 체약국 내 변화하는 조건을 고려하고 달성해야 할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대응해야 한다(*Weller v. Hungary*, 2009, § 28;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 63–64; *Ünal Tekeli v. Turkey*, 2004, § 54; *Stafford v. the United Kingdom* [GC], 2002, § 68;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6).

IV. 증명 책임

A. 원칙: 증명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80. 재판소는 증거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할 때 보통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anti incumbit probatio)”는 원칙을 적용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81. 재판소는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하는 것을 일반적인 표준으로 적용한다. 재판소의 소송 절차에는 증거 능력을 가로막는 절차 장벽 또는 평가를 위해 사전 결정된 공식이 없다. 재판소는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제출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추론 등 모든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여 부합하는 결론을 채택한다.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충분히 강력하고 명확하며 일치하는 추론 또는 반박할 수 없는 유사한 사실 추정이 공존하는 경우 증명될 수 있다. 또한, 특정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설득의 수준 및, 이와 관련하여, 증명 책임의 분배는 사실관계의 구체성, 추정의 성격 및 쟁점이 되는 협약 권리와 본질적으로 연결된다. 재판소는 체약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갖는 심각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47; *Timishev v. Russia*, 2005, § 39;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78).

82. 차별 사건에서 재판소는 일단 청구인이 대우의 차이를 입증하면 정당성 증명은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하였다(*Timishev v. Russia*, 2005, § 57).

83. 예를 들어 *Timishev v. Russia*, 2005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첸인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는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체첸 민족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의 존재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러시아는 청구인이 대기줄에서 우선 순위가 거절되자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설명했지만 일관성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민족성을 사유로 차별받았다고 인정하였다.

B. 예외: 증명 책임의 전환

84. 재판소는 또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원칙을 모든 사건에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협약 소송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문제된 사건이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당국만이 알고 있는 영역일 경우,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는 증명 책임은 당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Salman v. Turkey* [GC], 2000, § 100; *Anguelova v. Bulgaria*, § 111;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2020). 재판소는 청구인이 차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도 증명 책임을 전환하였다(*Cința v. Romania*, 2020).

85. 차별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 정부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차별 주장을 반증해야 하는 상황도 있으며, 반증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이를 사유로 협약 제14조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86. 차별 추정을 반박하려는 국가는 청구인이 실제로는 “비교 대상”과 유사하거나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는 점, 차등 대우가 요보호 사유가 아니라 그 외 객관적인 차이에 근거한다는 점, 또는 대우의 차이가 정당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2017, § 65;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91–92; *Timishev v. Russia*, 2005, § 57; *Biao v. Denmark* [GC], 2016, § 114;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77).

87.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청구인이 차별 대우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간접 차별 혐의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통계 데이터가 청구인의 차별 추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식 통계를 근거로 어떤 규칙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한 집단에 분명 더 높은 비율로 영향을 미친다는 일응의 증거의 징조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피청구국 정부는 이것이 차별과 무관한 객관적 요인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한다(*Hoogendijk v. the Netherlands* (dec.), 2005;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07, § 180; *Di Trizio v. Switzerland*, 2016, § 86).

88.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신뢰할 수 있고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통계는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일응의 증거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통계적 증거가 없으면 간접 차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88).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제 보고서도 이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89. 가정 폭력 사건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일련의 특수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그러한 폭력은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주고 당국의 조치는 단순히 가정 폭력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지체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용인한 것에 해당하며 여성인 청구인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증명해야 한다(*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3, § 89). 예를 들어 *Talpis v. Italy*,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성 대상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결론과 이탈리아 통계청의 결론을 통해 청구인이 자명한 차별의 존재를 증명한 것으로 보았다. *Opuz v. Turkey*, 2009 사건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주로 여성이라고 증명하는 통계는 재판소에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로 국제앰네스티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였다. 오히려 재판소는 튀르키예 내 여성 대상 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는 저명한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하였다. 한편, *Y and Others v. Bulgar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불

가리아 당국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불가리아 당국은 법 집행 당국이 가정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다수의 국제 행위자들이 심각하게 누락되었다고 비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종합적인 통계가 없는 경우, 청구인들은 전문 보고서 같은 기타 일응의 증거로 주장 증명을 시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제출한 세 건의 국제 보고서는 여성 대상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불가리아 당국에 촉구했지만, 경찰 또는 그 외 당국이 가정 폭력 사건을 계속 경시하거나 다루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현장 데이터를 인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사건을 특히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가 공무원의 여성 적대 편향 또는 가정 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불가리아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제14조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90. 폭력을 통한 차별이 주장되는 경우, 재판소는 당국이 폭력 행위를 일으킨 차별적 동기를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제2조 또는 제3조의 실제적 측면과 결합하여 가져온 협약 제14조 위반 혐의를 증명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ibid.*). 반대로 하자면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 주관적 태도가 없음을 증명하라고 피청구국 정부에 요구하는 모양이 된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57; *Bekos and Koutropoulos v. Greece*, 2005, § 65). *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사건은 체포 과정에서 군경이 두 명의 로마족 도망자를 총으로 쏜 것이다. 결국 재판소는 인종차별적 태도가 도망자들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또한 *Adam v. Slovakia*, 2016 참조). 그러나 제2조의 절차적 측면과 결합된 제14조 위반에 대해 재판소는 당국이 차별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91.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아르메니아 군인을 살해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승진하고 법적 근거 없는 여러 혜택을 받았으며 아제르바이잔 고위 관리 다수가 영웅으로 미화하고 대통령 웹사이트에 특별 페이지를 개설한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논란이 된 수단의 동기가 피해자의 출신 민족이라는 납득할 만큼 일응의 증거가 확실한 강력하고 명확하며 일관된 추론을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그러한 편향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서 증명 책임을 전환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차별 혐의를 반증할 의무를 아제르바이잔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92. *Basu v. Germany*,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개인이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경찰의 신원확인 대상이 되었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제8조의 범위에 속한다는 논쟁이 있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인종차별적 태도와 국가 대리인의 행위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당국의 의무는 제8조와 함께 검토되는 제14조에 따른 묵시적 책임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Muhammad v. Spain*, 2022, 68, *Basu v. Germany*, 2022, § 35).

93. 재판소는 또한 주장된 반노조 차별의 상황에서 이 규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차별의 일응의 사례를 증명하면 증명책임은 피고에 전가되고, 보통 증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고용주가 청구인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Hoppen and trade union of AB Amber Grid employees v. Lithuania*, 2023, § 230).

94. 다른 차별 사례로, 동일한 요보호 범주에 속한 타인의 관행 또는 신념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 사건도 있다. 크로아티아어 구사력이 형편없을 것이라 추정하고 로마족 아동을 로마족 전용 학급에 배치한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사건과 달리 통계만으로는 차별을 추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족한 언어 구사력을 이유로 아동을 별도 학급에 배치하는 수단은 로마족 학생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차등적 대우를 추정하게 하였다.

V. 차별의 사유

95. 제14조는 대우의 차이를 전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서로 구별되도록 식별 가능한 객관적이거나 개인적인 특성 또는 개인적 ‘상황’을 그 근거로 금지한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34; *Fábián v. Hungary* [GC], 2017, § 113; *Kiyutin v. Russia*, 2011, § 56).

96. 협약 제14조는 “~등의 사유”(프랑스어: notamment)라는 단어와 “기타 모든 상황”(프랑스어: toute autre situation)이라는 문구가 목록에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사유의 목록을 개방형으로 제시한다(*Clift v. the United Kingdom*, 2010, § 55; *Engel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76, § 72;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70). 또한 재판소는 “기타 상황”이라는 표현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보호되는 사유의 수를 확대한 풍부한 판례로 발전시켰다.

97. 이러한 점에서 재판소는 제14조에 정식으로 기술된 차별 금지는 특정 사건마다 해당 조항에 열거된 기준과 관련 있는 청구인의 개인적 상황이 있는 그대로 고려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특정 국적을 취득하는 등 문제의 요소 중 하나를 변경했다라면 차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14조는 실체가 없어진다(*Andrejeva v. Latvia* [GC], 2009, § 91).

A. 성별

98.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성평등 증진이 오늘날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주요한 최종 기대 목표이며(*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7), 그러한 대우의 차이가 협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원칙적으로 “매우 중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1985, § 78; *Burghartz v. Switzerland*, 1994, § 27; *Schuler-Zgraggen v. Switzerland*, 1993, § 67;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7; *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2019, § 89).

99. 재판소는 성별에 따른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의 전통, 일반적인 가정 또는 사회 전반의 인식을 언급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7). 예를 들어, 국가는 가족 내에서 남성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비롯된 전통을 강요할 수 없다(*Ünal Tekeli v. Turkey*, 2004, § 63;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7). 사회의 전통적인 성 역할 분담을 언급하여 육아 휴직 자격에서 남성의 배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 여성을 주 양육자로, 남성을 주 생계부양자로 인식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은 인종, 민족, 피부색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유사한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으로 대우의 차이를 충분히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43). *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113,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족 연금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를 도입한 국내법이 사회에서 여성의 성격이나 역할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영속화하고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가정생활 모두에 불리하다고 판결했다.

100.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는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혼인 평등(*Ünal Tekeli v. Turkey*, 2004; *Burghartz v. Switzerland*, 1994)

- 취업 기회(*Emel Boyraz v. Turkey*, 2014)
- 퇴직 연령(*Moraru and Marin v. Romania*, 2022);
- 육아 휴직 및 수당(*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Gruba and Others v. Russia*, 2021)
- 유족 연금(*Willis v. the United Kingdom*, 2002)
- 시민 의무(*Zarb Adami v. Malta*, 2006; *Karlheinz Schmidt v. Germany*, 1994)
- 가족 재결합(*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1985)
- 자녀의 성(姓)(*Cusan and Fazzo v. Italy*, 2014; *León Madrid v. Spain*, 2021)
- 가정 폭력(*Opuz v. Turkey*, 2009; *Volodina v. Russia*, 2019; *Tkheldze v. Georgia*, 2021)

101. *Carvalho Pinto de Sousa Morais v. Portugal*,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료 과실 소송에서 포르투갈 법원이 50세로 자녀가 돌인 여성에게 성 능력은 그보다 젊은 사람에게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여성의 성 능력이 본질적으로 자녀 생산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자아실현과 성 능력의 심리적, 신체적 관련성을 무시한 것이다.

102. 일반적으로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4조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역사적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고안된 과도기적 수단으로 인해 대우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경우에만 “합리적 근거의 명백한 부재”라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 61-66; *Runkee and White v. the United Kingdom*, 2007, §§ 40-41; *British Gurkha Welfare Societ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6, § 81). 예를 들어, 재판소는 국가 연금 제도에서 남녀의 대우 차이가 있는 것은 두 성별 간 사실상 불평등 시정을 겨냥한 적극적 수단의 한 형태이므로 허용된다고 인정하였다(*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 61; *Andrle v. the Czech Republic*, 2011, § 60). 같은 맥락에서, 여성 범죄자의 종신형 면제에 관한 *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도소 환경에서 젠더 기반 폭력, 학대, 성희롱으로부터 여성 보호 및 임신과 모성 보호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Alexandru Enache v. Romania*, 2017 사건에서 아동이 태어난 첫 해에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고려하여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 대한 징역형 유예를 허용하는 루마니아법이 정당하다고도 판단하였다(§ 76).

103. 경과조치에 관련된 재산적 맥락을 제외하고, 주장된 차별이 성별에 근거한 경우, “매우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청구인과 관련된 문제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청구인이 심각한 가정 폭력 희생자 보호용 “쉼터 제도” 하에 수용되었던 *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거 급여 삭감이 해당 제도의 목적(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과 상충되며, 한 가지 정당한 목적을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매우 중대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04. *Jurčić v. Croat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처음으로 여성이 임신을 사유로 차별받았다고 판결하였다. 시험관 시술(IVF) 열흘 뒤 고용된 청구인은 이후 임신 관련 합병증 때문에 병가를 냈다. 청구인의 보험 신청은 재심사를 거쳐 거절되었고, 관계 당국은 청구인의 고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임신을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여성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대우 차이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성별을 사유로 한 직접 차별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나아가 크로아티아법상 고용주는 임신부의 상태를 이유로 고용을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중 고용될 경우 고용의 진위 여부를 자주 심사하는 국내 관행도 확인하였다. 크로아티아 당국은 청구인의 사건을 결정하면서 시험관 시술로 인해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취업에 부적합하여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 취업을 자제해야 했다고 암시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임신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인의 취업을 막는 것과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임신 중이거나 단지 임신 가능성만으로 여성이 일하거나 구직해서는 안 된다고 암시하는 크로아티아 당국의 결론에 젠더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함의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apotnik v. Roman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임신으로 인한 청구인의 해외 외교관 파견 조기 종료가 외교 공관의 기능적 역량을 보장하고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판단하였다. 루마니아 당국은 이러한 대우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차별받은 것이 아니다.

105. *Nurcan Bayraktar v. Türkiye*,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바랄 때 부과되는 300일의 재혼 금지 기간을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제12조와 결합된 제14조를 위반하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친자 확인이 문제의 금지 기간을 이혼 여성에게 부과하는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 법원이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잠재적 역할과 출산 능력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의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106. 퇴직 조건이 다른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상황에 관한 *Moraru and Marin v. Roman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성에게 퇴직연령 이후에도 (그리고 남성에 대해 정해진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거나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123).

107. 재판소는 제14조와 결합된 제2조 및/또는 제3조 하에서 가정 폭력 관련 다수의 사건도 다루었다. 재판소는 가정 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의 한 형태이며, 이는 결국 여성 차별의 한 형태라고 명시하였다(*Opuz v. Turkey*, 2009, §§ 184–191; *Halime Kılıç v. Turkey*, 2016, § 113; *M.G. v. Turkey*, 2016, § 115; *Tkheldidze v. Georgia*, 2021).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보호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한다(*Talpis v. Italy*, 2017, § 141; *Opuz v. Turkey*, 2009, § 191; *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3, § 85; *T.M. and C.M.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4, § 57).

108.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적절하고 충분한 요소를 재판소에 제공하여 차별에 대한 일견 확실한 주장을 제시하기만 하면 그 후 성별과 관련된 불이익을 시정하려고 어떤 해결책을 펼쳤는지 입증할 책임은 피청구국에 전환된다. 적절한 증거는 당국, 학술 기관의 통계 데이터 또는 비정부기구, 국제 옵서버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증거는 (i)가정 폭력이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ii) 당국의 일반적인 태도가 그러한 폭력을 조성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109. 몰도바 당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들을 보호하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국의 (부)작위가 남편이 첫 번째 청구인에게 가한 폭력에 대처 실패 또는 지체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용인한 것에 해당하며 여성인 첫 번째 청구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89; 또한 *Mudric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3, § 63 참조).

110. *Volodina v. Russia*,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가정 폭력을 별도의 범죄 또는 다른 범죄의 가중 요소로 정의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상해 중대성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러시아 법체계는 모든 형태의 가정 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 및 적용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내재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가정 폭력을 정의하고 체계적인 수준에서 가정 폭력을 다루는 법률이 없다는 것은 러시아 당국이 가정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범위 및 가정 폭력이 여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인정하기 꺼려한다는 뜻이다. 러시아 당국은 가정 폭력에 유리한 분위기를 수년간 용인하여 여성이 신체적 완전성에 가해지는 학대 또는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서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였다. *Tunikova and Others v. Russ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같은 판단을 내리고 피청구국 정부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신속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일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11. 청구인이 심각한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들이 남편을 살해하게 된 *Talpis v. Italy*,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첫째, 가정 폭력이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여성이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의 손에 살해되었으며 둘째, 이탈리아에서 가정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기관의 결론을 통해 청구인이 일응의 증거가 존재함을 증명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바로 자신의 사건에서 당국의 오랜 부작위도 증명하였다. 더 최근인 *Landi v. Italy*,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2017년 *Talpis* 결정 이후 이탈리아가 이스탄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려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법적 환경이 수정되자 청구인은 가정 폭력 피해 여성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사법 체계의 광범위한 타성 또는 청구인의 사건에서 시행된 조치 또는 관행의 차별적 성격에 대한 일응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112. *Tkheldze v. Georgia*, 2021 사건에서 청구인의 딸은 파트너의 학대 끝에 살해당하였다. 제도적 실패와 젠더 기반 차별을 배경으로 가정 폭력이 주로 여성(피해자의 약 87%)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 통계 데이터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차별적인 성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태도와 관련된다고 보고한 여러 권위 있는 국제 현황점검 기관 및 조지아 고충처리위원회(Office of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를 근거로,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건에서 국내 당국이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의 부작위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또한 *A and B v. Georgia*, 2022 참조).

113. *A.E. v. Bulgaria*, 2023 사건에서 당시 미성년이었던 청구인은 파트너가 저지르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적 증거는 불가리아를 상대로 제기된 기존의 가정 폭력 사건과 더불어 불가리아 내 가정폭력의 주된 대상은 여성임을 증명하였으며(§§ 118-19) 이를 바탕으로 재판소는 불가리아 당국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보여주지 않았으며(§ 120) 불가리아 내 가정폭력 관련 문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제도가 소극적이라는 증거를 일단 갖춘 청구인의 사건을 반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22).

B. 인종 및 피부색

114. 민족성과 인종은 연관되어 있고 중첩되는 개념이다(*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43; *Timishev v. Russia*, 2005, § 56). 인종의 개념이 피부색이나 얼굴의 특징과 같은 형태학적 특징에 따른 인간의 아종(亞種)으로의 생물학적 분류라는 사상에 기반하는 반면, 민족성은 공통의 국적, 부족적 소속, 종교적 신앙, 공유된 언어 또는 문화적·전통적 출신과 배경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집단이라는 사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43; *Timishev v. Russia*, 2005, § 55).

115.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된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종 차별의 한 형태이다(*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43; *Timishev v. Russia*, 2005, § 55). 인종 폭력인 인종 차별은 특히 심각하며, 그 위험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당국의 특별한 경계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당국은 인종 차별에 맞서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성이 위협이 아닌 풍요로움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사회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강화해야 한다(*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43; *Nachova and Others* [GC], 2005, § 145; *Timishev*

v. Russia, 2005, § 56; *Soare and Others v. Romania*, 2011, § 201; *Stoica v. Romania*, 2008, § 117).

116. 이러한 맥락에서 인종 또는 민족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가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의 개념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96;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44). 다원주의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민족적 출신에 전적으로 또는 결정적으로 근거한 대우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76;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44; *Timishev v. Russia*, 2005, § 58).

117. 재판소는 경찰(*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B.S. v. Spain*, 2012; *Stoica v. Romania*, 2008; *Bekos and Koutropoulos v. Greece*, 2005; *Turan Cakir v. Belgium*, 2009; *Adzhigitova and Others v. Russia*, 2021) 또는 개인(*Abdu v. Bulgaria*, 2014;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2005; *Šečić v. Croatia*, 2007; *Makhashev v. Russia*, 2012; *Fedorchenko and Lozenko v. Ukraine*, 2012)이 자행한 인종차별적 폭력 사건을 다수 다루었다.⁴

118. 이와 관련하여 협약기구들은 인종에 근거한 차별이 특정 상황에서 그 자체로 제3조의 의미에서 “굴욕적 대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East African Asians v. the United Kingdom*, 1973, 위원회 보고서; *Abdu v. Bulgaria*, 2014, § 23).

119. 인종적 태도가 폭력 행위를 유발했다고 의심하는 경우, 특히 공식 조사는 열의를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인종차별적 태도가 의심되는 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국가 당국은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민족적 출신에 근거한 증오나 편견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인종차별과 민족 증오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인종차별적 폭력 위협으로부터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당국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한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60; *Abdu v. Bulgaria*, 2014, § 29). 인종차별적 태도와 특정 폭력 행위가 연결될 가능성을 찾아내야 하는 당국의 의무는 따라서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서 도출되는 절차적 의무의 한 측면일 뿐만 아니라, 제2조 및 제3조와 결합된 협약 제14조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책임의 일부이기도 하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60; *Abdu v. Bulgaria*, 2014, § 31; *Men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03).

120. 재판소는 나아가 로마족 파트너를 두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격한 *Škorjanec v. Croatia*, 2017 사건에서 인종을 동기로 한 폭력 행위의 조사 의무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제3조와 결합된 제14조는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개인적 신분 또는 특성에 근거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또는 추정되는 특정 신분 또는 요보호 특성을 가진 다른 사람과 피해자의 실제 또는 추정되는 연계 또는 소속에 근거한 폭력 행위도 포함된다.

121. 재판소는 반로마족 폭도들이 사전 계획하여 가정집을 공격하였는데도 로마족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에 관한 *Burlya and Others v. Ukraine*, 2018 사건은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 중 일부는 사건 당시 마을에 없었고 폭행은 없었다고 하지만 재판소는 특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122. *Paketova and Others v. Bulgar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위대가 실제로 인근에 들어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당연히 두려워하였던 마을에서 반복되는 반로마 행진 속에서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제14조와 함께 제8조 위반을 발견했다.

⁴ 아래 “폭력을 통한 차별” 참조.

로마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관리들이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는 청구인들의 평화로운 귀환에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123. 재판소는 로마인 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수많은 사건에서 제1의정서 제2조와 결합되어 해석한 제14조의 위반도 발견하였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Horváth and Kiss v. Hungary*, 2013;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Lavida and Others v. Greece*, 2013; *Sampanis and Others v. Greece*, 2008).⁵

124. 또한, 특히 로마족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로마족이 격동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떠돈 결과로 특정 유형의 빈곤하고 취약한 소수가 되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82). 관련 규제 체계와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로마족의 특수성과 고유한 생활 방식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ibid.*, § 181).

125. *Terna v. Italy*, 2021 사건에서 범죄 환경에서 살던 청구인의 손녀는 청구인이 돌볼 수 없기에 공공 양육 기관으로 보내졌다. 손녀의 후견인은 아동이 로마족 공동체 일원에게 납치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소에 청구인과 손녀의 면접교섭을 전면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되었다. 재판소는 이탈리아의 제도적 문제로 청구인과 손녀가 서로 한 번도 방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제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다수의 로마족 아동이 보호 기관에서 양육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아동의 민족적 출신에 관한 변론 대신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판결하였다. 또한 후견인의 의견은 편견을 반영하고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일축해버릴 수는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 국내 법원이 아동의 민족적 출신에 기인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결론짓기에는 불충분하다.

126. 그 외에도 재판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최고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 “구성 민족” 중 한 민족과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오로지 청구인의 민족적 출신을 사유로 제한되었다고 밝혀진 체첸인의 러시아 내 이동의 자유권(*Timishev v. Russia*, 2005), 민족적 출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 재결합 규칙(*Biao v. Denmark* [GC], 2016)을 인종·민족 차별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27. 재판소는 투표의 비밀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소수 후보자가 의회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가 소수 투표 시스템의 단점으로 인해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하였다(*Bakirdzi and E.C. v. Hungary*, 2022).⁶

128. *Budinova and Chaprazov v. Bulgaria* 사건 및 *Behar and Gutman v. Bulgaria* 사건은 전자의 경우 로마족에 대한, 후자의 경우 유대인에 대한 정치인의 증오 표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소는 이러한 표현이 “사생활”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불가리아 당국이 해당 정치인의 발언을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요컨대 불가리아 법원은 문제된 발언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불가리아에 살면서 각각 유대 민족과 로마 민족인 청구인의 사생활 존중권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여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필요한 균형 맞추기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민족 출신을 이유로 한 차별에 적절히 대응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129. *Muhammad v. Spain*, 2022, 사건에서 청구인과 그 친구는 모두 동일한 민족의 파키스탄 국민으로, 공공거리에서 인종을 이유로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받았다. *Basu v.*

⁵ 아래 “교육을 받을 권리” 참조.

⁶ 또한 아래 “정치적 권리들” 참조.

Germany, 2022, 사건에서 경찰은 어두운 피부 색을 이유로 인도계 독일 국적 신청자와 기타에 탑승한 그 딸의 신원 확인을 실시했다.

130. 그러나 재판소는 이미 협약의 실제적 조항에 대한 별도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 제14조에 따라 사건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로마족 여성의 불임시술에 관한 *V.C. v. Slovakia*,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3조(고문의 금지) 및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위반을 인정하고 제14조에 따른 청구인의 주장을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C. 언어

131. 재판소가 언어를 사유로 한 차별을 다룬 대표적인 사건은 벨기에 교육 제도 내 언어 교육에 관한 *Belgian linguistic case*, 1968 사건이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 단일 사용 지역이라면 교육 언어로 프랑스어를 채택한 초등학교를 설립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두 지역에서 주로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므로 교육을 두 언어로 모두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기에 대우의 차이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게다가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이라도 가족들이 프랑스어 사교육을 이용한다면 막지 않았다.

132. 이후 판례에서 협약기구는 협약이 언어의 자유, 특히 개인과 공공 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하고 해당 언어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Igors Dmitrijevs v. Latvia*, 2006, § 85; *Pahor v. Italy*, 1994, 위원회 결정; *Association "Andecha Astur" v. Spain*, 1997, 위원회 결정; *Fryske Nasjonale Partij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85, 위원회 결정; *Isop v. Austria*, 1962, 위원회 결정).

133. *Macalin Moxamed Sed Dahir v. Switzerland* (dec.) (2015) 사건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국적 기혼 여성이 개명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미혼 시절 이름을 “서양식” 발음 규칙에 따라 발음하면 소말리아어로 모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 때문에 요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제8조와 더불어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 언어를 사유로 한 차별의 피해자라고 청구하였다. 재판소는 모욕적인 의미로 들리는 언어는 소말리아어이고 청구인의 상황은 이름이 널리 사용되는 자국어로 모욕적인 의미를 갖는 사람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근거가 명백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34. *Paun Jovanović v. Serbia*, 2023,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에서의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내에서 동등하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세르비아어의 두 가지 변종 중 하나인 이제카비아어를 사용할 권리가 거부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세르비아어의 다른 공식 변종인 에바키어를 사용했고, 청구인과는 달리 법원으로부터 “공식 언어”를 사용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은 다른 변호사들과 다르게 대우받았다고 판단하였다 (§ 83). 재판소는 그러한 대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91).⁷

D. 종교

135. 이 협약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종교를 사유로 한 차별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협약 제9조에 정식으로 기술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실제적 조항을 포함한다.⁸ 이러한 개념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무관심자”를 보호하므로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으며 특정 종교 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한다(*S.A.S. v. France* [GC], 2014, § 124;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2016, § 103). 종교와 신념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며, 반드시 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앙과 관련될 필요는 없다(*Moscow Branch of the Salvation*

7. 또한 위 “제 12 의정서 제 1 조” 참조.

8. 이와 관련하여, 또한 협약 제9조에 대한 해설서(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참조.

Army v. Russia, 2006, §§ 57–58;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2001, § 114; *Hasan and Chaush v. Bulgaria* [GC], 2000, §§ 62 및 78). 사이언톨로지 같은 신흥 종교와 비전통 종교 단체도 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Church of Scientology Moscow v. Russia*, 2007; *Ancient Baltic religious association “Romuva” v. Lithuania*, 2021).

136. 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영역과 다양한 종교, 교단, 및 신념과의 관계에서 규제 권한을 행사할 때 국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2007, § 131; *Manoussakis and Others v. Greece*, 1996, § 47;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2001, § 123). 해당 의무는 종교적 신념의 정당성 또는 그러한 신념이 표현되는 방식을 평가하는 국가측의 어떠한 권한과도 양립할 수 없었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2016, § 68; *S.A.S. v. France* [GC], 2014, § 55;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 81).

137. 종교 공동체는 국가가 특정 특권을 수반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특정한 법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자율적이지만, 그러한 지위를 부여한 국가는 종교 단체가 이러한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설정된 기준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게 해야 한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2016, § 164). 종교를 사유로 한 차별에 관하여 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종교에만 기반한 차등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Hoffmann v. Austria*, 1993, § 36).

138. 재판소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종교를 사유로 한 대우의 차이가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의 신앙에 근거한 폭력(*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2007; *Milanović v. Serbia*, 2010)
- 특정 교회는 학교에서 종교 교육 제공 및 종교혼의 공식적인 인정 불가능(*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2010)
- 부모 중 한 쪽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친권 부여 거절(*Hoffmann v. Austria*, 1993; *Vojnity v. Hungary*, 2013)
-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사기업 피고용자는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이와 반대로 제9조의 관점에서만 검토한 *Ebrahimian v. France*, 2015 참조)
- 영국 국교회가 아닌 곳에서 혼인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승인 증명서 취득 요건(*O’Donoghu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0)
- 종교 단체로 등록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기간의 일관성 없는 적용(*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2008)
- 종교 교육에서 면제된 학생에게 윤리 수업 및 관련 표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Grzelak v. Poland*, 2010)
- 알레비 신앙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교적 공공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2016)
- 국가의 중립성 및 공평성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이유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이교도 종교 단체에 대한 국가의 인정 거부(*Ancient Baltic religious association “Romuva” v. Lithuania*, 2021)
- 비공인 종교의 공동 의식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면세 거부(*Anderlecht Christian Assembly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Belgium*, 2022).

139. 재판소는 *Molla Sali v. Greece* [GC], 2018 사건에서 무슬림 유언자가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장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비무슬림 유언자와 비교하여 받은 대우의 차이에 대해 종교를 사유로 한 연계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국가가 종교적 신념으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도 분명히 하였다(*Thlimmenos v. Greece* [GC], 2000).

140. 그 외 경합하는 권리 또는 자유가 종교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종교를 사유로 한 대우의 차이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건도 있다.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면 가리기 금지에 관한 *S.A.S. v. France* [GC], 2014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금지가 종교적 사유로 공공장소에서 전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자 하는 무슬림 여성의 상황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공공의 안전 및 개방적·민주적 사회가 추구하는 최소한의 가치 존중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60-162; 또한 *Köse and Others v. Turkey* (dec.), 2006 참조).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무엇보다도 혼인 호적 담당관과 상담사가 각각 동성 혼인의 집전을 거부하고 동성 커플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이들이 고용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해당 협약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책무를 수행하기로 한 개인의 결정은, 비록 제9조 권리에 대한 간섭이 있었는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때 그 무게를 달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9).

141. *Palau-Martinez v. France*, 200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자녀의 거주권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제14조와 결합된 제8조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더 최근에는 *T.C. v. Italy*, 2022 사건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청구인이 천주교로 양육한 어린 자녀를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취소 및 심사 가능한 명령이 협약 제9조에 비추어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42. *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2000) 사건은 정통 유대교 단체가 엄격한 요건에 따라 도축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사안이다. 청구인 단체는 국가가 다른 단체는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의 거부가 차별적이라고 청구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거부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였으며, 사용된 수단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간 합리적인 비례성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Alujer Fernández and Caballero García v. Spain* (dec.), 2001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발렌시아에 있는 침례교 복음주의 교회의 구성원이었으며, 스페인 정부와 사전 합의 없이 자신들의 소득세 일부를 교회에 직접 할당할 수 없다는 점에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교회가 소득세 수입의 일부를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국가와 합의해야 하는 의무에 근거가 없거나 해당 분야에서 국가가 누리는 폭넓은 재량에 비추어 불균형하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E.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143. 재판소는 1976년에 이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호의적으로 수용되거나 불쾌하지 않거나 무관심으로 간주되는 “정보” 또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인구의 어떤 부문이라도 불쾌하게 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교란하는 것까지 보호함을 분명히 하였다(*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1976, § 49).⁹ 정치적 견해는 특권적 지위를 받았다. 재판소는 자유 선거와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토론의 자유가 모든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구성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Oran v. Turkey*, 2014, § 51). 따라서 정치적

⁹ 이와 관련하여, 또한 [협약 제10조에 대한 해설서](#)(표현의 자유) 참조.

표현 또는 공익적 질문에 대한 토론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Kurski v. Poland*, 2016, § 47).

144. 재판소는 개인의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를 사유로 한 차별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Georgian Labour Party v. Georgia* (2008) 사건은 혁명 이후 상황에서 선거 직전에 새로운 유권자 등록 체계를 도입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정당이 이의를 제기한 선거 방식 또는 특정 지역 유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청구인의 정당만을 겨냥한 것이며 해당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Adali v. Turkey* (2005) 사건은 튀르키예 정부 및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당국의 정책과 관행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이 살해된 사건으로, 그의 아내가 차별이었다고 주장한 협박을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주장된 사안이다. 재판소는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를 사유로 한 차별의 존재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45. *Virabyan v. Armenia*, 2012 사건에서, 청구인이 정치적 신념에 의해 국가 대리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인종 차별 및 인종차별적 폭력에 맞서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당국의 의무는 협약 제3조에 위배되는 대우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가해진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정치 운동의 평화로운 공존을 의미하는 정치적 다원주의가 법의 지배에 기반한 민주사회의 생존에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치적 반대를 억압, 제거, 억제하거나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갖거나 발언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저지른 폭력 행위는 그러한 사회의 이상과 가치에 특별히 위협적이다(§§ 199-200).

F.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146. 재판소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에 따르면, 오로지 국적에만 근거한 대우의 차이를 협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Gaygusuz v. Austria*, 1996, § 42; *Koua Poirrez v. France*, 2003, § 46; *Andrejeva v. Latvia* [GC], 2009, § 87). 예를 들어 *Andrejeva v. Latvia* [GC],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라트비아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소련(현재 라트비아 영토이며 청구인은 라트비아 거주)에서 취득한 근속 연수를 퇴직 연금 수급권 산정 시 고려하지 않아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하여 해석된 제14조의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147. 더 최근에는 *Savickis and Others v. Latvia* [GC],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적에 따른 대우 차이의 맥락에서, 특히 특권, 자격 및 재정적 혜택이 걸려있는 한 문제의 법적 신분과 연결된 개인 선택의 요소가 중요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구소련의 다른 주에서 발생한 영주권이 있는 비시민권자의 취업 기간을 국가 연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적인지 검토를 요청받았다. 이를 검토하면서 대재판부는 *Andrejeva* 사건과 달리 재량의 폭이 넓다고 판결하였다. 불법 점령 및 합병 이후 라트비아가 독립성을 회복한 구체적인 맥락에서, 재판소는 당시 상황에서 청구인들과 라트비아 시민 간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유가 제시되었다고 인정하였다.

148. 국적을 사유로 차별하였다고 추정되는 그 외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당국이 실직 남성에게 긴급 지원 거부(*Gaygusuz v. Austria*, 1996)
- 가족의 국적 상실이 대가족의 어머니인 청구인의 신분 및 관련 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Zeibek v. Greece*, 2009)
- 자녀의 친자 관계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법률 지원을 거부당한 불법 체류 외국인(*Anakomba Yula v. Belgium*, 2009)

- 청구인이 프랑스 국민이 아니며 문제의 혜택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청구인의 국적국 간 상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 수당 지급 거부(*Koua Poirrez v. France*, 2003)
- 청구인의 외국 국적을 이유로 예방적 구금상태에서 치료 또는 완화 프로그램 접근 거부(*Rangelov v. Germany*, 2012)
- 슬로베니아 당국이 영주권자 등록부에서 불법적으로 “삭제”한 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시민이라는 청구인의 다른 체류 신분을 장기간 정상화하지 않음(*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2012)
-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중등교육 비용 납부 의무화(*Ponomaryovi v. Bulgaria*, 2011)
- 덴마크 출신 시민과 달리 귀화 시민의 가족 재결합 허용 거부(*Biao v. Denmark* [GC], 2016)
- 특정 외국에서 온 모든 예비 양부모에게 소급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금지(*A.H. and Others v. Russia*, 2017)

149. *Biao v. Denmark* [G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이 새로 입국한 외국인의 통합을 방해하는 양상을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특정 국가의 일반적으로 편향된 가정이나 만연하는 사회적 편견으로는 귀화자를 차별하는 사건에서 대우의 차이를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126).

G. 소수(민족)와의 연계

150. 재판소는 판례에서 “소수민족”을 정의하거나 “소수민족과의 연계”만을 사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적은 없다. 그러나 여러 사건에서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 행사를 다루었다.

151. “소수 집단”에 관한 문제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다루는 일부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Paraskeva Todorova v. Bulgaria*, 2010 사건에서 로마족 청구인에게 불가리아 법원은 집행 유예 선고를 거부하였는데,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비차별 정서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이들에게는 집행 유예가 유죄 판결이 아님을 강조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민족적 소속과 더불어 이러한 결정은 같은 소수 집단에 속한 개인을 정죄하여 로마족 공동체에 본보기 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38-40) 제14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152. 재판소는 제14조에 따라 “성적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Bayev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은 성 소수자의 정체성, 권리, 사회적 지위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사안이다. 러시아 정부는 문제의 법률이 대다수의 러시아인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 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혐오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도덕을 사유로 한 정당화와 관련하여 대중의 정서가 재판소의 평가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법률은 동성애 소수자에 대해 미리 심어진 편향에 해당하며 소수 집단의 협약 권리 행사가 다수에 의해 수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협약의 기본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0).

153. *Molla Sali v. Greece* [GC],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수자 보호 분야에서 “자유로운 자기식별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였다(§ 157).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남편이 그리스 민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된 것에 제소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트라키아 무슬림 소수 민족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상속권에 관한 심판 대상이 된 수단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의심하였다. 재판소는 종교적 소수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반법을 선택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 보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자기식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권리는 소수집단의 일원으로 대우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적용되지만, 특정 소수집단의 일원으로 대우받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이 두 번째 측면에서, 선택은 정보를 제공받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해당 소수의 다른 구성원과 국가 스스로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이나 기타 조약에서 소수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별 제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문제의 수단은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H. 재산

154. 재판소는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및 *Chabauty v. France* [GC], 2012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에서 재산을 사유로 한 차별을 검토하였다.¹⁰

155.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사건은 청구인들의 토지가 현지 수렵인 단체의 사냥터에 강제로 포함되고, 청구인들이 단체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계 있다. 재판소는 사냥 이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할 자유와 관련하여 대규모 토지 소유자와 소규모 토지 소유자를 구분하는 것을 적절하게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제1의정서 제1조 및 협약 제11조와 결합된 제14조의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156. 한편 *Chabauty v. France* [GC],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대규모 토지 소유자와 달리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윤리적 사유가 아니면 승인된 수렵인 단체의 통제에서 토지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제1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I. 출생

157. “출생 신분”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에 근거한 차별이 협약에 부합한다고 간주하려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전제되어야 하며(*Fabris v. France* [GC], 2013, § 59; *Wolter and Sarfert v. Germany*, 2017, § 58; *Inze v. Austria*, 1987, § 41), 여기에는 혼인 내 또는 혼인 외 출생 아동의 부모에게 대우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포함된다(*Sahin v. Germany* [GC], 2003; *Sommerfeld v. Germany* [GC], 2003).

158. 재판소는 1979년에 이미 출생에 근거한 자녀의 상속권 제한이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Marckx v. Belgium*, 1979, § 59). 그 이후에도 이 기본 원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아동의 “혼인 외” 출생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유럽 공공질서 보호의 기준으로 확립하였다(*Fabris v. France* [GC], 2013, § 57).

159. 오늘날 유럽평의회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혼인 내 출생 자녀와 혼인 외 출생 자녀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이를 계기로 해당 주제에 대한 각국 입법부의 접근 방식 통일 및 아동 간 평등 달성이라는 과업목표를 확실히 지지하는 사회적·법적 발전을 이루었다(*Fabris v. France* [GC], 2013, § 58).

160. 다수의 회원국에서 상속 목적으로 “혼인 외 출생” 자녀(“혼외자”)와 “혼인 내 출생” 자녀(“친생자”)를 구별했던 것은 협약 제14조 단독으로(*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1986), 협약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라(*Brauer v. Germany*, 2009; *Vermeire v. Belgium*, 1991) 또는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라(*Inze v. Austria*, 1987; *Mazurek v. France*, 2000; *Merger and Cros v. France*, 2004; *Fabris v. France* [GC], 2013) 여러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유언에 의한 처분이 관련된 경우 차별 금지를 유지하여 자발적 처분이 포함되도록 판례를 확장하였다(*Pla and Puncernau v. Andorra*, 2004).

¹⁰ 또한 “승인된 지자체 수렵인 협회 설립일에 존재가 인정된” 지주 협회 및 그 이후 설립된 지주 협회 간 대우 차이에 대한 권고적 의견, 2022 참조.

161. 어머니가 몰타인이 아닌 혼외 출생 아동에게 몰타 시민권을 주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민권은 협약상의 권리가 아니며 청구인의 사건에서 시민권 거부하는 협약 제8조 위반을 초래하지 않지만, 청구인의 사회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협약 제14조의 일반적인 범위와 영역 내에 있다고 설명하였다(*Genovese v. Malta*, 2011). 이어서 제14조의 위반이 인정되었다.

162. 그러나 사망자의 재산 청산이 혼인 외 출생 자녀가 입양되기 훨씬 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러한 경우 청구인은 사망한 부모의 재산에 대해 제1의정서 제1조의 의미 내에서 “재산(possession)”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제14조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Alboize-Barthes and Alboize-Montezume v. France* (dec.), 2008; *Wysowska v. Poland* (dec.), 2018, § 51).

163. *Zeggai v. France*, 2022, § 55, 사건에서 재판소는 생년월일이 개인의 “출생”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했다. 청구인은 알제리 독립 이전에 태어났는지 그 이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동생들과 다르게 대우받았다.

J. “기타 상황”

164. “기타 상황”이라는 단어는 통상 넓은 의미로 사용하며(*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70), 그 해석은 선천적이거나 내재적이라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특성에 국한되지 않았다(*Kiyutin v. Russia*, 2011, § 56; *Clift v. the United Kingdom*, 2010, § 56).

1. 연령

165. 재판소는 협약 제14조의 목적 상 연령은 “기타 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Schwizgebel v. Switzerland*, 2010, § 85; *Carvalho Pinto de Sousa Morais v. Portugal*, 2017, § 45). 그러나 현재까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다른 차별 사유와 동일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없다(*ibid.*; *British Gurkha Welfare Societ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6, § 88)

166. *Schwizgebel v. Switzerland*, 2010 사건에서 스위스법은 미혼인 경우 특정 연령까지만 입양을 허용함에 따라 미혼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입양이 금지되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수단으로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므로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에서 ‘신생 가족’에 대한 주거 급여 지급 자격의 연령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이민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Šaltinytė v. Lithuania*, 2021).

167. 재판소는 또한 구금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성인 간 대우의 차이를 다룬 사건에서 연령을 사유로 한 차별 추정에 대한 제소 사건을 심리하고(*D.G. v. Ireland*, 2002; *Bouamar v. Belgium*, 1988), 각 사건에서 대우의 차이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의 보호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제5조와 결합된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소는 청소년 범죄자의 종신형 면제가 이 문제에 관한 국제법 체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행소년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목적에 비례한다고 판단하였다(*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2017, § 80).

168. *Carvalho Pinto de Sousa Morais v. Portugal*, 2017 사건에서 부인과 수술을 받은 후 의료 과실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자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연령과 성별 둘 다 항소심 판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대우의 차이를 두었다고 판결하였다. *Deaconu v. Romania* [위원회],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통사고로 여동생이 사망했을 때 연령 때문에 교통이

덜했다는 이유로 형제자매 중 손윗사람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합리적 정당화가 부족하여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169. 연령을 사유로 한 차별 문제는 미성년자의 살인 재판과 관련된 두 건의 사건에서도 제기되었으나(*T. v. the United Kingdom* [GC], 1999; *V. v. the United Kingdom* [GC], 1999), 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이미 제6조제1항 위반이 인정되었으므로 제14조에 따른 주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2. 젠더 정체성

170. 협약 제14조에 따른 차별 금지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증대하게 다룬다(*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2015, § 96). 재판소는 또한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독특하고 내밀한 두 가지 특성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은 그러한 내밀한 특성을 건드려 한 사람의 평판을 충분히 심각한 수준으로 공격할 수 있다(*Sousa Goucha v. Portugal*, 2016, § 27).

171. 재판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젠더 정체성 사안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다루었다.

- 성전환 수술을 받을 권리(*L. v. Lithuania*, 2007)
- 선호하는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2002; *I. v. the United Kingdom* [GC], 2002; *L. v. Lithuania*, 2007) 및 이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법적 요건(*Hämäläinen v. Finland* [GC], 2014)
- 혼인할 권리(*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2002; *I. v. the United Kingdom* [GC], 2002)
- 민간 의료보험사를 상대로 한 성전환 조치 환급 청구 관련 법원 절차의 공정성(*Van Kück v. Germany*, 2003)
- 시민 신분을 변경하지 않고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받을 권리(*Hämäläinen v. Finland* [GC], 2014)
- 성전환 수술 관련 발생한 의료 비용에 대한 책임(*Schlumpf v. Switzerland*, 2009)
- 젠더 정체성을 사유로 청구인의 친권 제한 및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박탈(*A.M. and Others v. Russia*, 2021).

172. *Hämäläinen v. Finland* [GC], 2014 사건에서 시스젠더 여성과 혼인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법적 여성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을 생활동반자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출생 시 자동으로 법적 성별을 인정받았고 청구인의 말에 따르면 청구인처럼 “강제” 이혼의 위험이 없는 시스젠더와 청구인이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12).

173. *Semenya v. Switzerland**,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 외 규정에 따라 국제 대회 여성부에 참가하려면 선천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야 했던 전문 운동선수의 제소를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논란이 된 규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대는 근거 또는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임상시험심사 및 사법심사가 제한적이었다는 이유로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63–202).

174. 일부 젠더 정체성 사건은 제14조에 따른 별도의 심사 없이 실제적 협약 조항만으로 처리되었다. *Y.Y. v. Turkey*, 2015 사건에서 청구인은 성전환 수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튀르키예 법원은 청구인이 영구적으로 불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수년 동안 성전환 수술을 받을 가능성을 거부한 국가는 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3. 성적 지향

175. 재판소는 제14조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사유”에 성적 지향을 재차 포함하였다(*Salgueiro da Silva Mouta v. Portugal*, 1999, § 28; *Fretté v. France*, 2002, § 32).

176. 1999년 재판소는 부모의 권리에 관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Salgueiro Da Silva Mouta v. Portugal*, 1999; 또한 *X v. Poland*, 2021 참조). 그 이후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성적 지향 문제를 검토하였다.

- 동성애 관계에서 형법상 동의 연령 차이(*L. and v. v. Austria*, 2003; *S.L. v. Austria*, 2003; *B.B. v. the United Kingdom*, 2004; *Santos Couto v. Portugal*, 2010)
- 자녀 입양 허가(*X and Others v. Austria* [GC], 2013; *E.B. v. France* [GC], 2008; *Gas and Dubois v. France*, 2012)
- 사망한 파트너의 임차권을 승계할 권리(*Karner v. Austria*, 2003; *Kozak v. Poland*, 2010)
- 사회적 보호(*P.B. and J.S. v. Austria*, 2010; *Mata Estevez v. Spain* (dec.), 2001)
- 구금 조건(*X v. Turkey*, 2012)
- 자녀 양육에 관한 규정(*J.M. v. the United Kingdom*, 2010)
- 시민 결합(*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2013)
- 혼인(*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2016)
- 가족 재결합(*Pajić v. Croatia*, 2016; *Taddeucci and McCall v. Italy*, 2016)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 집회 및 결사의 자유(*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Alekseyev and Others v. Russia*, 2018; *Genderdoc-M v. Moldova*, 2012; *Zhdanov and Others v. Russia*, 2019; *Berkman v. Russia*, 2020; *Association ACCEPT and Others v. Romania*, 2021)
- 동성애 혐오 발언 또는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 및 조사의 효율성(*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2015; *M.C. and A.C. v. Romania*, 2016;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Aghdgomelashvili and Japaridze v. Georgia*, 2020; *Sabalić v. Croatia*, 2021; *Association ACCEPT and Others v. Romania*, 2021; *Genderdoc-M and M.D.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1; *Oganezova v. Armenia*, 2022).

177. 재판소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은 “인종, 출신 또는 피부색”에 근거한 차별만큼 심각하다고 강조하였다(*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2012, § 55). 성적 지향에 따른 대우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국가 재량의 폭은 좁다(*Kozak v. Poland*, 2010, § 92; *Karner v. Austria*, 2003, § 41). 또한 오로지 성적 지향에 대한 고려만으로 차등 대우하는 것은 협약에 따라 용납될 수 없다(*E.B. v. France* [GC], 2008, §§ 93 및 96; *Salgueiro da Silva Mouta v. Portugal*, 1999, § 36; *X and Others v. Austria* [GC], 2013, § 99).

178.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검토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8조를 현재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면서 안정적인 사실상의 관계를 맺고 동거하는 동성 커플의 관계도 같은 상황에 있는 이성 커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가족 생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다(*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 94). 또한, 재판소는 동거하는 두 여성 사이의 관계와 한 명이 임신했지만 두 여성이 모두 양육하는 자녀가 협약 제8조의 의미에서 “가족 생활”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X and Others v. Austria* [GC], 2013, § 95; *Gas and Dubois v. France*, 2012, § 37).

179. 혼인할 권리와 관련하여 동성혼의 불허는 제8조 또는 제12조와 결합된 제14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된 반면¹¹(*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2016), 동성 커플을 시민 결합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2013). 입양과 관련하여, *E.B. v. France* [GC], 2008 사건에서 재판소는 레즈비언인 청구인이 다른 여성과의 동거하는 생활 방식을 이유로 당국이 입양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X and Others v. Austria* [GC], 2013 사건에서 미혼 동성 커플이 두 번째 부모로서의 입양(second-parent adoption)이 불가능한 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입양이 가능한 미혼 이성 커플에 비해 차별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Gas and Dubois v. France*, 2012 사건에서 시민동반자관계에 있는 이성 커플도 입양 명령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모의 동성 파트너에게 유리한 단순 입양 명령이 거부된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동성 파트너의 거주 허가 거부는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Pajić v. Croatia*, 2016; *Taddeucci and McCall v. Italy*, 2016).

180. 가족 생활의 맥락에서 벗어나 재판소는 동성애 소수자에 대한 이성애 다수자의 편견을 구체화한 미성년자 동성애 조장 금지 입법과 관련하여, *Bayev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에서 제10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을 밝혔다(§ 91). 반면, 청구인이 안정적인 동성결합의 유족 파트너였으나 동성혼이 인정되기 전에 파트너가 사망하여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Aldeguer Tomás v. Spain*, 2016 사건에서 협약 제8조 및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하여 해석한 제14조의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181.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동성애 커플로, 페이스북에 입맞추는 사진을 게시한 후 여러 차례 심각한 위협과 모욕적인 댓글을 받았다. 관할 당국은 청구인들의 행동이 “괴상”하고 리투아니아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거부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과 동성애자 커뮤니티 전반을 향한 사인들의 혐오 발언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대한 편협한 태도에 의해 선동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당국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사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그 가운데 동일한 차별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182. *Sabalić v. Croat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증오 동기를 조사하지 않고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소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폭력적인 동성애 혐오 공격에 대처하는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 경우 국내 당국은 실효성이 없는 경범죄 절차를 불필요하게 도입하여 국내 형법의 관련 조항과 요건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폭력 공격의 배후에 있는 증오 동기를 조사하지 않은 것과 폭력적 증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그러한 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모두 제7의정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범죄 절차의 “근본적 결함”에 해당한다. 비효율적인 경범죄 절차를 개시하고 그 결과 형식적인 이유로 이후 형사 절차를 잘못 중단함으로써, 국내 당국은 청구인의 성적 지향에 기인한 청구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관련하여 협약에 따른 절차적 의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Stoyanova v. Bulgaria*, 2022 사건에서 청구인의 아들은 동성애자로 보인다고 생각한 세 명의 남성에게 공격당해 살해당했다. 국내 법원은 살인의 기저에 동성애 혐오 동기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지만, 이는 법정 가중 요인을 구성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양형에도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실제 또는 추정되는 성적 지향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공격이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¹¹ 제12조에 대한 해설서(혼인할 권리) 참조.

183. *Nepomnyashchiy and Others v. Russia*, 2023 사건에서 LGBTI 커뮤니티의 일원인 청구인들은 LGBTI 커뮤니티를 향한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공개 발언에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소된 발언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라 해도 협약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7). 러시아에서 대중은 과거부터 LGBTI 커뮤니티에 적대감을 보였고 당시 강력 범죄 등 동성애를 혐오하는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동성애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내용과 공격성과 적대성이 두드러지는 어조를 비롯하여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 영향력 있는 공인들이 작성하고 다수의 독자를 보유한 여러 유명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제소된 발언이 “심각성의 기준선(threshold of severity)”에 도달하여 해당 집단 구성원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59–62). 본안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에 동성애 혐오 발언을 포함하여 낙인찍는 발언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적 기제와 형법적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79), 당국의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국내 조항이 청구인들의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고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85).

184.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실제적 조항만으로 성적 지향 문제를 검토한 사건도 있다.

- 성인 간 동성애 관계에 대한 형법상 금지(*Dudgeon v. the United Kingdom*, 1981; *Norris v. Ireland*, 1988; *Modinos v. Cyprus*, 1993; *A.D.T. v. the United Kingdom*, 2000)
- 동성애자 군대 제대(*Lustig-Prean and Beckett v. the United Kingdom*, 1999;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1999; *Perkins and R. v. the United Kingdom*, 2002; *Beck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2)
- 해외에서 맺은 동성 혼인의 등록 거부(*Orlandi and Others v. Italy*, 2017)
- 동성 파트너십의 인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법체계를 수립할 적극적 의무(*Oliari and Others v. Italy*, 2015)
- 구금 조건(*Stasi v. France*, 2011)

4. 건강 및 장애

185. 재판소는 협약 제14조 및 제12의정서 제1조의 범위에 장애, 의학적 상태 또는 유전적 특징에 따른 차별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Glor v. Switzerland*, 2009, § 80; *G.N. and Others v. Italy*, 2009, § 126; *Kiyutin v. Russia*, 2011, § 57). 장애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다른 법적 대우를 설정하는 데 있어 국가의 재량은 상당히 축소된다(*Glor v. Switzerland*, 2009, § 84).

186. 특히 2003년 1월 29일 유럽평의회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권고 1592호(2003)와 2006년 12월 13일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언급하면서, 재판소는 장애인을 차별 대우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유럽 및 전 세계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Glor v. Switzerland*, 2009, § 54). 여기에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합리적인 편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별에 해당된다(*Enver Şahin v. Turkey*, 2018, §§ 67–69; *Çam v. Turkey*, 2016, §§ 65–67; *G.L. v. Italy*, 2020, §§ 60–66).

187. 신체장애인의 공공건물 접근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적용될 심사 기준이 국가가 장애인을 수용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 및 조정”을 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동시에 국가에 “비례성을 상실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Arnar Helgi Lárusson v. Iceland*, 2022, § 59). 피청구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건물의 문화유산 보호를 고려하여 공공 건물의 접근성 필요를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수단을 동원한 경우, 재판소는 예술·문화 센터가 있는 현지 공공 건물 두 곳에 접근할 수 없었던 휠체어 장애인인 청구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ibid*; 제8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Botta v. Italy* (dec.), *Zehnalová and Zehnal v. the Czech Republic* (dec.) 및 *Glaisen v. Switzerland* (dec.) 비교).

188. 주택과 관련하여, *Guberina v. Croatia*, 2016 사건에서 청구인은 중증 장애 자녀의 특수성에 맞게 개조한 새 부동산 구입에 면세를 요청하였다. 당국은 아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미 적절한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크로아티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함으로써 합리적인 편의, 접근성, 장애인 차별 금지 등의 원칙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장애와 관련하여 청구인 가족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협약 제14조와 결합된 제1의정서 제1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자녀의 장애를 이유로 한 청구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협약 제14조에서 보장하는 장애 기반 차별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2019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거 급여가 삭감되어 장애가 있는 딸의 특수성에 맞게 개조된 집에서 강제로 이사를 해야 했다. 재판소는 이사를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지장을 주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더 작고 적절하게 개조된 곳으로 이사할 수 있고 재량적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대책의 효과는 비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01).

189. 교육 영역에서 재판소는 대학 구내 접근 관련 장애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Enver Şahin v. Turkey*, 2018 사건은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제1의정서 제2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G.L. v. Italy*, 2020 사건에서는 비언어성 자폐를 앓고 있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2년 동안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특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재판소는 초등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장애인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선택하는 것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청구인이 장애로 인해 비장애 학생들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조건에서 초등학교에 계속 다닐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190. 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Cința v. Romania*, 2020 사건에서 루마니아 당국은 청구인의 정신 질환이 양육 능력이나 자녀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재판소는 정신 질환이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신 질환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거나 여러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신 질환이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과 관련이 없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양육권 소송에서 학습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대리할 국선 변호사 선임에 관한 *R.P.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2, § 89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조치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재판소는 체약국이 청구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소송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선변호사 제도가 체약국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법적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았지만, 청구인의 상황은 그러한 사람과 현저히 다르며 대우의 차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된다고(§ 89).

191. *Negovanović and Others v. Serbia*, 2022 사건에서 유사한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면 국가 스포츠 표창의 한 형태로 시각장애가 없는 선수에게 수여되는 재정적 보상을 시각장애인 체스 선수에게 수여하지 않는 것은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192. 선거라는 맥락에서 재판소는 *Strøbye and Rosenlind v. Denmark*, 2021 사건에서 행위능력이 박탈된 사람의 선거권 박탈 문제를 검토하였다. 정신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덴마크 법률에 따라 선거권 박탈의 대상이 아니었고, 개별화된 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대책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3조를 단독으로 또는 협약 제14조와 결합하여서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또한 *Caamaño Valle v. Spain*, 2021 참조). *Toplak and Mrak v. Sloven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근위축증을 앓고 휠체어를 타는 청구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93. 감염병 환자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HIV 감염 같은 상태를 포함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도 장애 또는 그 형태로서 협약 제14조 본문의 “기타 상황”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Kiyutin v. Russia*, 2011, § 57). 재판소는 HIV 감염인이 사회의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국가들은 그들의 HIV 상태에 근거한 차등 대우를 위해 이 집단을 선별하는 수단을 선택할 때 좁은 범위의 재량만이 주어져야 한다(*Kiyutin v. Russia*, 2011, § 64; *I.B. v. Greece*, 2013, § 81).

194. 협약의 다른 보호 사유와 마찬가지로, 제14조가 아닌 실체적 권리에 의해서만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Pretty v. the United Kingdom*, 2002 사건에서 청구인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재판소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정부로부터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을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신체적으로 자살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법에 예외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남용을 허용하고 제2조가 보호하는 생명권 보호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89).

5. 부모 및 혼인의 상황

195. *Weller v. Hungary*,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부모의 상황을 사유로 한 차별은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첫 번째 청구인은 어머니, 양부모 및 후견인만 자격이 있는 수당의 수급이 거부된 아버지였다.

196.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혼인 상태도 “기타 상황” 용어에 포함되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Serife Yiğit v. Turkey* [GC], 2010 사건에서 재판소에 따르면 부모 간 혼인 관계가 부재한 것도 제14조가 금지하는 차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상황”의 일면이라고 밝혔다(§ 79).

197. *Petrov v. Bulgaria*, 2008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인 수감자가 혼인하지 않은 파트너에게 거는 전화 통화가 금지되었으므로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198.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사건은 동거하는 두 자매가 유족 배우자 또는 시민 동반자가 향유하는 상속세 면제 자격이 없다고 제소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청구인들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동거 기간이 길었다고는 해도 이들의 동거 관계는 혼인 또는 시민동반자인 커플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결하였다 *Korosidou v. Greece*, 2011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별한 아내로서 유족 연금을 거부당한 청구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따라 청구인은 혼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있었기에 미혼 상태로 사망한 파트너의 재산을 자동으로 상속할 수 없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Makarčeva v. Lithuania* (dec.), 2021).

199. *Muñoz Díaz v. Spain*, 2009 사건은 로마족 의식에 따라 이루어진 청구인의 혼인이 국가가 유족 연금 수급 자격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이다. 재판소는 스페인 당국이 청구인을 파트너의 “배우자”로 인정하였음을 파악했다. 문제의 여성 청구인과 그 가족은 가족 기록부를 발급받았고, 대가족 신분이 부여되었으며, 의료 지원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청구인의 선의에 비추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고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반면, *Serife Yiğit v. Turkey* [GC], 2010 사건에서 청구인은 전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혼인하였으나 사망한 파트너의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 상태로 파트너의 사망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민법에 따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문제가 된 차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4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6. 이민 상황

200. 재판소는 이민자로서의 지위가 개인에게 내재된 신분이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지위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제14조의 목적상 “기타 상황”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Hode and Abdi v. the United Kingdom*, 2012, § 47; *Bah v. the United Kingdom*, 2011, § 46). 실제로 개인의 이민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다양한 법적 및 그 외 효과가 발생한다(*ibid.*).

201. *Hode and Abdi v. the United Kingdom*, 2012 사건은 난민으로 인정되어 비영주권(limited leave)을 받은 청구인이 모국을 떠난 후 혼인한 배우자를 수용국에 불러들일 수 없던 사안이다. 재판소는 난민 지위가 이민자 지위와 달리 선택의 요소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난민 지위를 지지하는 변론이 더욱 강력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47).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202. *Bah v. the United Kingdom*,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의도치 않게 노숙자가 된 사람이 아들이 출입국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우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청구인은 망명 신청자로 영국에 입국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소는 차등 대우의 근거가 되는 상황의 성격이 체약국에 부여할 재량의 범위를 결정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47). 이민 상황과 관련된 선택의 요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근거에 따른 차등 대우는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지만, 요구되는 정당성은 예를 들어 국적에 따른 차별인 경우만큼 중대하지 않다(§ 47). 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차등 대우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52).

203. *M.T. and Others v. Sweden*, 2022, § 111, 사건에서 재판소는 “보충적 보호 지위”를 가진 사람과 “난민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가족 재결합 권리와 관련하여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신청자는 스웨덴에서 보충적 보호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보충적 보호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의 가족에게 스웨덴에서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데 일시적인 제한을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거주 허가가 거부되었다. 재판소는 난민 지위를 가진 사람에 비하여 청구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7).

204. 재판소는 다른 여러 사건에서도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정하였다. *Ponomaryovi v. Bulgaria*,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중등학교 수업료 납부 의무가 국적 및 이민자 신분을 사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49). 이는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제1의정서 제2조와 결합된 협약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녀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거부당한 *Anakomba Yula v. Belgium*,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6조(재판청구권)와 결합된 협약 제14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7. 고용 관련 상황

205. 고용 분야에서 재판소는 예를 들어 고위 공직에 있는 것은 제14조의 목적상 “기타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Valkov and Others v. Bulgaria*, 2011, § 115).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금 상한이 연금 상한이 면제된 특정 고위 공무원과 비교하여 차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206. 또한 재판소는 “기타 상황”의 개념이 특정 상황에서 군 계급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ngel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76 사건은 군 기강 위반으로 각 지휘관으로부터 다양한 처벌을 받은 징집병에 관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계급에 따른 구분이 제14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72). 그러나 관할 국가 당국이 이 영역에서 상당한 재량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Beeckman and Others v. Belgium (dec.),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경찰 계급’도 ‘기타 상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207. ‘청구인이 비밀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협약 제14조의 목적상 “기타 상황”으로 간주된다(*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2004; *Žičkus v. Lithuania*, 2009; *Naidin v. Romania*, 2014). *Žičkus v. Lithuania*, 2009 사건에서 청구인은 전직 KGB 장교였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취업이 금지되었다. *Naidin v. Romania*, 2014 사건에서 전직 정치 경찰 협력자의 공무원 취업이 금지되었다.

208. *Graziani-Weiss v. Austria*, 2011 사건은 ‘변호사 및 공증인’이 정신질환자의 무보수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다른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관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두 집단 간 대우의 차이가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후견이라는 목적상 두 집단이 타당할 정도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65).

8. “기타 상황”의 추가 예시

209.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의 연금 권리를 산정할 때 교도소 노역을 참작하지 않은 *Stummer v. Austria* [GC], 2011 (§ 90) 사건에서 ‘수감자’¹²인 것이 제14조의 목적상 개인적 상황의 한 측면임을 분명히 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접견권 및 텔레비전 접근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와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에 대한 법제의 정당하지 않은 차이도 인정하였다(*Laduna v. Slovakia*, 2011; *Chaldayev v. Russia*, 2019; *Vool and Toomik v. Estonia*, 2022).

210. *Clift v. the United Kingdom*,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형기에 따라 조기 석방을 위한 절차적 요건 속 차이를 고려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5년 이상 확정된 형을 살고 있는 수감자라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우에 차이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형기의 길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수감자가 공중에 가할 위험에 대한 양형 판사의 평가 등 다른 여러 요인도 관련될 수 있다. 형기에 따라 수감자에게 조기 석방 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제5조에 따른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14조의 목적상 “기타 상황”을 누리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211. *Granos Organicos Nacionales S.A. v. Germany*,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독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거부하여 자연인과 법인,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 간 대우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지만, 이 특정 사건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관련이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212. *Moraru v. Roman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개인의 크기가 “기타 상태” 목록에 속하는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적 특징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자신이 군의학을 공부하기 위한 입학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한 국가 당국의 결정이, 인체 측정의 특성, 특히 키와 몸무게를 근거로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7)¹³.

213. 재판소는 “개인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기타 상황”의 범위에 속하는 대우의 차이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214.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단체의 회원 자격’이 협약 제14조의 목적상 “기타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2009; *Grande Oriente d’Italia di Palazzo Giustiniani v. Italy (no. 2)*, 2007).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2009 사건에서 국가는 노동조합 가입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¹²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해설서 참조.

¹³ 아래 “교육을 받을 권리” 참조.

못했다. *Grande Oriente d'Italia di Palazzo Giustiniani v. Italy (no. 2)* (2007) 사건은 프리메이슨이 지역 공직을 신청할 때 회원 자격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관한 사안이었다.

215. 마찬가지로, “기타 상황”에는 ‘거주지’도 포함될 수 있다(*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Aleksandr Aleksandrov v. Russia*, 2018; *Baralija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사건은 국가와 상호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의 물가 연동권 부재에 관한 사안이다. *Aleksandr Aleksandrov v. Russia*,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영주권이 범죄 발생 지역과 형이 선고된 지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구금형 선고를 거부당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대우의 차이가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216. *Pinkas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일한 법제도에 속하는 사법 서기와 판사 사이의 업무 관련 수당에 관한 처우 차이가, 피청구국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한 “기타 상황”에 근거한 “간접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217. *Özgürlük ve Dayanışma Partisi (ÖDP) v. Turkey*,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불충분한 대중의 지지를 사유로 정당 간 대우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지원받을 자격에 필요한 법정 최소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한 것에 관한 것으로, 제14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218. 재판소는 또한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제14조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Beian v. Romania (no. 1)*, 2007). 연금 청구가 청산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우의 차이를 두는 것 또한 정당화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Maggio and Others v. Italy*, 2011).

9. “기타 상황” 외 상황의 예시

219. 개인적 상황과 연결되지 않은 특정한 대우의 차이는 “기타 상황”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20. 예를 들어 *Gerger v. Turkey* [GC], 1999 사건에서 재판소는 가석방과 관련하여 수감자 간 대우 차이는 *Clift v. the United Kingdom*, 2010 사건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 간에 구별된 것이므로 수감자에게 “기타 상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221. 제14조의 목적으로 “기타 상황” 개념에 속하지 않는 대우 차이의 그 외 예시는 다음을 포함한다.

- 복지 혜택에 대한 권리 취득 여부(*Springett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10)
- 고용 계약 기간 및 성격(*Peterka v. the Czech Republic* (dec.), 2010);
- 다른 지역에서 어업권 보유(*Alatulkkila and Others v. Finland*, 2005)
- 다른 군사 임무에 파견(*De Jong, Baljet and Van den Brink v. the Netherlands*, 1984)
- 세금 환급 관련 다른 법적 신분(*National & Provincial Building Society,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and Yorkshire Building Society v. the United Kingdom*, 1997)
- 소규모 노조와 대규모 노조 간 차이(*National union of Belgian police v. Belgium*, 1975; *Swedish Engine Drivers' Union v. Sweden*, 1976)

- 상업 광고와 특정 이념 전달 선전의 차이(*VgT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2001)

VI. 차별의 주제

A. 사생활 및 가족생활

222. 재판소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향유에 대한 차별에 관한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른 소장을 검토하였다.¹⁴

223. 재판소는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단순한 바람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E.B. v. France* [GC], 2008, § 41), 가족의 존재(*Marckx v. Belgium*, 1979, § 31) 또는 적어도 예를 들어 혼외자와 그 생부 간 잠재적 관계(*Nylund v. Finland* (dec.), 1999), 또는 아직 가족 생활이 완전히 성립되진 않았더라도 진정한 혼인에서 비롯된 관계(*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1985, § 62), 또는 합법적이고 진정한 입양에서 비롯된 관계(*Pini and Others v. Romania*, 2004, § 148)가 전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224.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른 아동 면접 교섭에 관한 몇 가지 사건을 검토하였다.

- 혼외자에 대한 아버지의 면접교섭권 부여 거부(*Sommerfeld v. Germany* [GC], 2003)
- 어머니의 종교적 신념만을 유일한 근거로 한 양육권 박탈(*Hoffmann v. Austria*, 1993)
- 동성 커플의 두 번째 부모로서의 입양 불가능(*X and Others v. Austria* [GC], 2013)
- 육아 휴직 권리와 관련하여 남녀 군인 간 대우의 차이(*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 관련 아버지와 어머니 간 대우 차이(*Rasmussen v. Denmark*, 1984)
- 혼외자의 아버지가 친자 관계라는 DNA 증거가 있어도 어머니의 동의 없이 친권 행사 불가능(*Paparrigopoulos v. Greece*, 2022)
- 자녀가 어릴 경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징역형 연기 허용 법안(*Alexandru Enache v. Romania*, 2017)
- 가족 재결합(*Biao v. Denmark* [GC], 2016)¹⁵
- 아버지의 정신 장애에 따른 면접교섭권 제한(*Cînța v. Romania*, 2020)¹⁶
- 지역의 성 고정 관념과 가부장적 관행이라는 배경 하에 친조부가 납치한 자녀와 남편과 사별한 아내의 재결합 지원 실패(*Tapayeva and Others v. Russia*, 2021)

225. 재판소는 제8조가 가족을 이룰 권리 또는 입양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E.B. v. France* [GC], 2008, §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권리 또는 협약 제8조의 의미 내 “사생활”의 개념에 따라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결정에 관한 사건을

¹⁴ 이와 관련하여, 또한 [협약 제8조에 대한 해설서](#)(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참조.

¹⁵ 아래 “이민” 참조.

¹⁶ 아래 “건강 및 장애” 참조.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ibid.*, § 43). 그 결과 재판소는 다음과 관련된 사건에서 제14조에 대한 존중을 검토하였다.

-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레즈비언이라는 청구인의 생활 방식을 사유로 입양 목적의 승인 거부(*E.B. v. France* [GC], 2008)
- 생모의 동성애 파트너에게 유리한 단순 입양 명령 거부(*Gas and Dubois v. France*, 2012)
- 동성 커플의 두 번째 부모로서의 입양 불가능(*X and Others v. Austria* [GC], 2013)
- 특정 국적자의 아동 입양 금지(*A.H. and Others v. Russia*, 2017)
-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친모가 인지(認知)하도록 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의무(*D. v. France*, 2020)

226. 재판소는 또한 시민결합 또는 혼인 체결 관련 사건에서 제14조 위반을 발견하였다. *Muñoz Díaz v. Spain*, 2009 사건은 유족 연금 수급 자격 확립을 목적으로 로마족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안이었다. 재판소는 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청구인의 선의를 고려하면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Şerife Yiğit v. Turkey* [GC], 2010 사건에서는 전적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혼인한 청구인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재판소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범위에서 동성 커플은 제외하고 이성 커플로 한정된 “시민결합”을 도입한 것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하였다. *Ratzenböck and Seydl v. Austria*, 2017 사건은 동성 커플 전용으로 만들어진 등록 동반자관계를 맺는 것이 거부된 이성 커플에 관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이러한 시민 동반자관계가 만들어진 맥락과 청구인들은 혼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살피고 나서 이러한 상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동성 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적 인정 부족과 관련된 *Oliari and Others v. Italy*, 2015 사건 등에서처럼 재판소가 제8조만을 근거로 유사한 질문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B. 정치적 권리

227.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차별 금지는 유럽평의회 주요 최종 기대 목표인 민주주의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0조,¹⁷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11조¹⁸ 또는 자유 선거권에 관한 제1의정서 제3조와 결합된 제14조의 위반으로 판단하였다.¹⁹

228. *Bayev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에서 청구인은 미성년자 동성애 조장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소는 해당 국내법이 이성애자 다수와 동성애자 소수 간 부당한 대우의 차이를 만들어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83) 제10조와 결합된 제14조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29. 제11조와 결합된 제14조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건도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프리메이슨이 지역 공직을 신청할 때 회원 자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Grande Oriente d'Italia di Palazzo Giustiniani v. Italy (no. 2)*, 2007)

¹⁷ 이와 관련하여, 또한 [협약 제10조에 대한 해설서](#)(표현의 자유) 참조.

¹⁸ 이와 관련하여, 또한 [협약 제11조에 대한 해설서](#)(집회와 결사의 자유) 참조.

¹⁹ 이와 관련하여, 또한 [제1의정서 제3조에 관한 해설서](#)(자유롭게 선거할 권리) 참조.

- 차별적 기준에 따라 시위 또는 공개 집회 개최 허가 거부(*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Genderdoc-M v. Moldova*, 2012; *Alekseyev and Others v. Russia*, 2018)
- 동성애 혐오 폭력으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국가(*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2015) 또는 반대 시위대의 방해를 받은 LGBTI 행사의 평화로운 진행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Berkman v. Russia*, 2020)
- LGBTI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의 등록 거부(*Zhdanov and Others v. Russia*, 2019)
-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수렵 단체 회원이 되어 하는 의무(*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230.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항만사가 피고용자의 노조 가입 포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회가 제한된 특수 작업팀으로 재배치, 불법 해고, 임금 삭감, 징계 제재, 법원 판결에 따른 노조원 복직 거부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사건에서 국가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Zakharova and Others v. Russ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주요 조합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해고 등 고용주가 채택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지 않아 이러한 적극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Hoppen and trade union of AB Amber Grid employees v. Lithuania*, 2023, 사건에서 청구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소는 법체계와 사법 구제가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31.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공공 자금 접근성과 관련하여 정당의 차별 추정도 조사하였다. *Demokrat Parti v. Turkey* (dec.),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정당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입장에 처한 다른 정당과 다르게 대우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정당은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다른 정당과 비교하여 다르게 대우받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232. 재판소가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위반을 발견하고 나서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참가자의 권리를 간섭할 수 있는 공공 행사의 장소, 시간 또는 진행 방식 변경을 제안하는 당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권한에 관한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233.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선거 입후보 자격’(로마족과 유대인이 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헌법에 정의된 “구성 국민” 중 하나에 속한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Zorn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14; 청구인의 거주지로 인해 지방 선거에서 투표 또는 입후보할 수 없는 경우인 *Baralija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아직 의회에 진출하지 않은 소수민족 단체의 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 추가 자격 요건에 관한 *Danis and Association of Ethnic Turks v. Romania*, 2015 및 *Cegolea v. Romania*, 2020) 및 ‘선거권’(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의 의회 선거 투표 불가능에 관한 *Aziz v. Cyprus*, 2004; 국내 실향민이 실제 거주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차별적 거부에 관한 *Selygenenko and Others v. Ukraine*, 2021)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제1의정서 제3조 및/또는 제12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의원 선출을 바라는 정당의 의석 진입선을 설정하는 등 선거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폭넓은 재량권을 재차 강조하고, 이전 총선에서 의석 진입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궐선거에서 제외된 정당에 관한 사건에는 제1의정서 제3조와 결합된 제14조의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Cerneá v. Romania*, 2018).

234. *Toplak and Mrak v. Sloven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근위축증을 앓고 휠체어를 타는 청구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수단을

취하여 적극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검토하였다. 휠체어 사용자가 충분히 출입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전반적으로 완전히 개조하면 휠체어 사용자의 투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판소는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에서 국가의 재량권을 재차 강조하였다. 2015년 국민투표에서 두 청구인 모두 투표에 참여했고, 첫 번째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투표소에 경사로가 설치되었으며, 두 번째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투표 당일의 며칠 전에 자신의 선거구 투표소 방문이 예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직면했을 수 있는 문제가 차별에 해당할 정도로 특별히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비밀을 존중해야 할 법적 의무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신청자에게는 투표기계 부족이 차별이라고 보이지 않았다.

235. *Bakirdzi and E.C. v. Hungary*, 2022,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각각 그리스 및 아르메니아 소수 민족에 속하는 헝가리 국민이며 2014년 의회 선거에서 소수 민족 유권자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은 헝가리 내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소수 대표에 대한 우선적 기준이 있는 법적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53). 재판소는 소수민족 후보자가 동일한 소수민족 구성원에 의해서만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적격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모든 후보자와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55). 소수민족 유권자로 등록된 결과, 청구인들은 자신이 속한 소수민족 목록 전체에만 투표하거나 또는 소수민족 목록 전체에 대한 투표를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다른 정당 목록 사이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없었고, 국가 소수자 목록에서 후보자가 선출되는 순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61).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선거에서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으며, 그들의 선거 선호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72).²⁰

C. 고용

236. 협약은 고용권을 보장하지 않지만, 제8조는 상황에 따라 고용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37.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2004 사건에서, 전직 KGB 요원이면 공무원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이 제한되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으며, 생계 유지가 심각하게 어려워져 사생활 향유에 미친 영향이 명백하였다(§ 48). *Bigaeva v. Greece*,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변호사 지망생에게 의무 교육 이수 후 입학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국적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I.B. v. Greece*, 2013 사건은 HIV 감염병을 앓는 피고용자가 다른 피고용자들의 압박으로 해고된 사안이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협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의 권리를 비교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38. 재판소는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제11조에 따른 노조 가입 자유(*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2009),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고로부터의 보호(*Hoppen and trade union of AB Amber Grid employees v. Lithuania*, 그리고 제9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결합하여(종교적 신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 수행을 거부한 피고용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관한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보장하였다.

239. 이와는 다른 맥락으로 *Acar and Others v. Turkey* (dec.), 2017 사건에서는 파산 절차 개시가 1년도 더 남은 시점에 발생한 피고용자의 고용 관련 청구는 해당 고용자에 대한 후속 파산 절차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차별 진정을 심사 부적격으로 선언하며 튀르키예의 파산법이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청구인들은 파산 선언

²⁰ 또한 위의 “인종 및 피부색” 참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일반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개별적으로 청구를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40. 그러나 재판소가 실제적 조항에 대한 위반을 발견하여 제14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예를 들어 *Redfearn v. the United Kingdom*, 2012 사건에서 청구인은 극우 정당에 정치적으로 속해 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당해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1년 미만 근속자를 포함한 피고용자를 정치적 견해 또는 소속을 사유로 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약 제11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57).

D. 사회적 권리

241. 협약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수장 및 연금과 같은 일부 형태의 사회 보장은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의정서 제1조의 범위 내에 있거나(*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Luczak v. Poland*, 2007; *Andrejeva v. Latvia* [GC], 2009; *Koua Poirrez v. France*, 2003; *Gaygusuz v. Austria*, 1996; *Pichkur v. Ukraine*, 2013), 특히 사회적 혜택이 가족 결합에 도움이 되는 경우 제8조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음(*Weller v. Hungary*, 2009; *Bah v. the United Kingdom*, 2011; *Gouri v. France* (dec.), 2017; *Belli and Arquier-Martinez v. Switzerland*, 2018; *Petrovic v. Austria*, 1998; *Okpisz v. Germany*, 2005)이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분명하다.

242. 그 결과 차별로부터 보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연금 지급(*Pichkur v. Ukraine*, 2013; *Andrejeva v. Latvia* [GC], 2009) 또는 유족 연금 지급(*Aldeguer Tomás v. Spain*, 2016; *Willis v. the United Kingdom*, 2002)
- 실업 수당(*Gaygusuz v. Austria*, 1996)
- 장애 수당(*Koua Poirrez v. France*, 2003; *Belli and Arquier-Martinez v. Switzerland*, 2018; *Popović and Others v. Serbia*, 2020)
- 주거 급여(*Vruntou v. Cyprus*, 2015; *Šaltinytė v. Lithuania*, 2021)
- 육아휴직 수당(*Petrovic v. Austria*, 1998)
- 자녀 수당(*Okpisz v. Germany*, 2005)
- 보험 혜택(*P.B. and J.S. v. Austria*, 2010)
- 자녀가 있는 가족 지원 사회보장수당(*Weller v. Hungary*, 2009)

243. 예를 들어 *Pichkur v. Ukraine*, 2013 사건에서 청구인은 해외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자 제소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인구 이동 증가, 수준 높은 국제 협력 및 통합, 은행 서비스 및 정보 기술 분야 발전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회보장 수급자를 기술적 동기로 제한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3). 당국이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지 못하여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4조를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Willis v. the United Kingdom*, 2002 사건에서 재판소는 아내에게 지급하는 유족배우자 수당을 남편이라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별을 사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 이후 재판소는 *Runkee and White v. the United Kingdom*, 2007; *Cross v. the United Kingdom*, 2007; *Blackgrove v. the United Kingdom*, 2009 등 여러 사건에 동일한 해법을 적용하였다.

244. *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68–82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회 복지 혜택 분야에서 제14조를 적용하기 위해 “가족 생활”의 측면에서 제8조의 “범위”의 경계를 설정할 기준을 명확히 했다. 문제되는 유족 연금은 생존 부모가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생활”을 증진하려는 것이고 연금 수급 여부는 청구인의 가정 생활의 구성 방식에 상당한 기간동안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45. 재판소는 또한 특정 사회보장제도에 속할 수 있다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Luczak v. Poland*, 2007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적 때문에 농민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폴란드 정부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청구인의 농민 제도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폴란드의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농업 부문을 보호할 필요성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246. *Popović and Others v. Serbia*, 2020 사건에서 민간인 장애 수당 수혜자인 청구인들은 똑같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데도 군인 수혜자로 분류된 사람들보다 적은 액수의 장애 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을 고수하였다. 재판소는 두 집단 간 대우 차이는 두 집단의 구별되는 입장과 이에 상응하여 피청구국 측에서 크고 작은 혜택 제공을 약속한 결과라고 판결하였다. 여기에는 참전 용사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존중해야 할 국가의 도덕적 채무가 포함되었다.

247. 그러나 사회적 권리 영역에서 국가에 주어지는 재량은 상대적으로 폭이 넓다. 재판소는 자국 사회와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사회적 또는 경제적 근거에서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때 재판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합리적인 토대가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해당 영역에서 입법부의 정책 선택을 전반적으로 존중한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Luczak v. Poland*, 2007, § 48).²¹ *L.F. v. the United Kingdom* (dec.), 2022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통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자선 단체가 소유한 사회주택에서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재판소는 이렇게 배제되어 청구인이 유일한 살 곳을 잃은 것이 아니며(이미 임시 사회주택 보유), 지방 당국이 동의한 자선 단체의 할당 정책이 사회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국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일이었다.

248. *Stummer v. Austria* [GC], 2011 사건은 청구인의 교도소 노역을 연금 권리 산정에 참작하지 않은 사안이다. 재판소는 기준이 변하는 상황에서 체약국이 수감자의 출소 후 사회 재통합에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여기는 보험 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보았다. *Andrle v. the Czech Republic*,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남성에게는 해당 사항 없이 자녀를 양육한 여성에게만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낮춘 것은 문제의 불평등 시정을 겨냥한 수단이며,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대등하게 맞추기 위한 대책으로서 그 시기와 범위가 명백할 정도로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Beeckman and Others v. Belgium* (dec.), 2018 사건에서 경찰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경찰관인 청구인들이 소속된 급여 체계를 변경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의 폭넓은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49. 그러나 재판소는 이미 협약의 실체적 조항에 대한 별도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 제14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의 종료와 관련된 *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2004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1조(재산의 보호) 위반을 발견하고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 이민

250. 재판소는 본 협약으로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거나 정착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Pajić v. Croatia*, 2016, § 79; *Novruk and Others v. Russia*, 2016, § 83; *Ibrogimov v. Russia*, 2018, § 18). 그러나 가족 재결합 또는 성인 자녀와 부모

21. 위 “비례성” 참조.

간의 연결고리 유지에 관한 사건인 경우, 재판소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협약 또는 그 의정서 조항 하나 이상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251. 제8조가 일반적인 가족 재결합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Jeunesse v. the Netherlands* [GC], 2014, § 107), 그 점을 제외하면 제8조와 부합할 출입국 관리 방법은 차별이자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1985, § 71; *Biao v. Denmark* [GC], 2016, § 118). *Pajić v. Croatia*,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성 커플에게는 가족 재결합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반면 미혼 이성 커플에게는 이를 허용하는 관련 국내법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Taddeucci and McCall v. Italy*, 2016 사건에서 국가는 미혼 커플을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르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재결합의 관점에서 이성애 커플만이 혼인하면 “배우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의 개념을 이성애 커플로 한정하였다. *Biao v. Denmark* [GC], 2016 사건에서 가족 재결합 허가를 거부한 것은 다른 국가와의 기존 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며, 재판소는 국내 이민 수단이 인종과 국적을 사유로 제14조를 위반하여 간접적인 차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2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례가 다소 드물다는 점을 인정하였다(*Biao v. Denmark* [GC], 2016, § 118). *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1985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영국에 합법적이고 영구적으로 정착한 반면, 그들의 남편은 영국에 체류하거나 합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재판소는 영국에 정착한 남성과 가족 재결합을 위해 영국에 정착한 여성 간 대우의 차이를 성별을 사유로 한 차별로 판단하였다(§§ 74-83). 이와 함께, 청구인 중 한 명은 입국 신청자의 아내 또는 약혼녀는 본인 또는 부모가 영국 출생이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출생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대우의 차이가 출생으로 인해 국가와 연결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판단하였다(§§ 87-89). 난민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 이민자가 입국 후 배우자를 동반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 *Hode and Abdi v. the United Kingdom*,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정 이민자 집단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협약 제14조(§ 53)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해당사건에서는 위반을 발견하였다.

253.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은 핵심적인 가족구성원도 아니고 부양 가족이거나 앞으로 될 것 같지도 않은 성인과 관련된 “가족 생활”의 존재에 근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인 자녀와 부모 간 연결고리는 협약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에 해당하므로(*Novruk and Others v. Russia*, 2016, §§ 88-89), 이러한 사건에서는 제8조와 결합된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다. *Novruk and Others v. Russia*,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HIV 양성인 외국인의 거주 허가 신청 및 건강 상태를 사유로 한 러시아 재입국 영구 금지와 관련한 대우의 차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F. 교육을 받을 권리

254. 협약 제1의정서 제2조에는 교육을 받을 독자적인 권리가 포함된다.²² 따라서 재판소는 교육 관련 차별 소송은 제14조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Ponomaryovi v. Bulgaria*, 2011, §§ 48-49).

255. 재판소는 로마족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여러 사건에서 제1의정서 제2조와 결합하여 해석한 제14조의 위반을 발견하였다. 해당 사건들은 비례성을 상실한 숫자의 로마족 아동이 정신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에 배치(*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Horváth and Kiss v. Hungary*, 2013), 로마족 전용 학교에 배치(*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또는 로마족 전용 학교에 배치(*Lavida and*

²² 이와 관련하여, 또한 제1의정서 제2조(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안내서 참조.

Others v. Greece, 2013)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본관의 별관 내 특수 교실로 배정되기 전에는 학교에 갈 수 없었던 것과 관련된다(*Sampanis and Others v. Greece*, 2008). 이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는 로마족 학생들이 받은 차등 대우가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간접 차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Sampanis and Others v. Greece*, 2008; *Horváth and Kiss v. Hungary*, 2013; *Lavida and Others v. Greece*, 2013;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X and Others v. Albania*, 2022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제46조에 따라 거의 로마족과 이집트인 아동만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차별 폐지 조치를 취해야 했다.

256. 재판소는 또한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관련한 차별 사건도 검토하였다(*Enver Şahin v. Turkey*, 2018; *Çam v. Turkey*, 2016). 장애 초등학생이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특수 지원을 받지 못했던 *G.L. v. Italy*,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은 사실상의 불평등 시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Çam v. Turkey*, 2016 사건은 입학 시험 경쟁을 거쳐 합격했지만 음악 아카데미 입학을 거부당한 시각 장애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Enver Şahin v. Turkey*,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대학이 대학 구내 접근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재판소는 특정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비례성을 상실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 및 조정으로 이해되는 “합리적인 편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권리협약(CRPD)에 비추어 제14조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Enver Şahin v. Turkey*, 2018, § 60; *Çam v. Turkey*, 2016, § 65). 교육 영역에서 구현해야 하는 “합리적 편의”의 원칙을 정의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었다(*Enver Şahin v. Turkey*, 2018, § 61; *Çam v. Turkey*, 2016, § 66). 그러나 재판소는 국가가 이 영역에서의 선택에 있어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닌 장애 아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Enver Şahin v. Turkey*, 2018, § 67; *Çam v. Turkey*, 2016, § 67).

257. *Ponomaryovi v. Bulgaria*, 2011 사건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 불가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들은 중등 교육을 받으려면 학비를 내야 했다. 재판소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초중등 교육을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이민자 신분을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58. *Moraru v. Romania*, 2022, 사건에서 청구인은 키(150cm), 몸무게(44kg)가 국방부령으로 정한 기준치에 미달하여 당시 수년간 군의학 입시를 볼 수 없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체적 특징이 법이 정한 범위 (§ 44) 내에 있는 다른 여성 후보자들과 다르게 대우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국이 입법부가 선택한 기준(후보자의 최소 크기 포함)과 이러한 제한에 대해 제공된 정당성(즉, 각 후보자의 강점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 반드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욱이 국내 법원은 CJEU의 판례(§§ 53–55)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²³

G. 폭력에 의한 차별

259. 제14조의 보장은 청구인이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당국이나 사인이 직접 저지른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60. 재판소는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측면에 기반하여 폭력 사건을 검토하였다.

- 젠더(*Opuz v. Turkey*, 2009; *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3; *Halime Kiliç v. Turkey*, 2016; *Tkheldize v. Georgia*, 2021)

²³ 위 “다른 상황” 참조.

- 인종 및 민족적 출신(*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2005; *Škorjanec v. Croatia*, 2017;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2020; *Adzhigitova and Others v. Russia*, 2021)
- 종교(*Milanović v. Serbia*, 2010;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2007)
- 정치적 견해(*Virabyan v. Armenia*, 2012)
- 성적 지향(*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2015; *M.C. and A.C. v. Romania*, 2016)

261.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2조(*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Angelova and Iliev v. Bulgaria*, 2007), 제3조(*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3; *B.S. v. Spain*, 2012; *Abdu v. Bulgaria*, 2014), 제6조 및 제8조(*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2005)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262. 재판소는 관련 조항의 실제적 측면 및 절차적 측면에 따라 차별적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심리하였다.

1. 실제적 측면

263. 국가 공무원의 자행으로 추정되는 폭력으로 인한 제14조 위반으로 제기된 경우, 제2조 또는 제3조의 실제적 범위에 따른 재판소의 임무는 피해자가 속해 있거나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당국의 문제 행위를 일으킨 원인인지 규명하는 것이다(*Stoica v. Romania*, 2008, § 118; *Antayev and Others v. Russia*, 2014, § 123).

264. 국가 대리인이 공격한 배후에 차별적 동기가 있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절차적 측면에서 제2조 또는 제3조의 위반을 거듭 발견했지만, 실제적 측면의 위반을 발견한 사례는 훨씬 적었다(*Stoica v. Romania*, 2008; *Antayev and Others v. Russia*, 2014).

265. 경찰과의 사건 중 경찰관이 인종적 동기로 로마족 미성년자를 학대한 *Stoica v. Romania*, 2008 사건에서 재판소는 처음으로 제14조와 결합된 제3조의 실제적 측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인종적 편향에 따른 학대를 받았다는 일견 증거가 확실한 주장을 제시하였다고 납득하고 증명 책임을 정부에 넘겼다. 재판소는 형사 조사를 담당한 검사나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도, 이 사건이 인종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변론을 제시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3조의 실제적 측면과 결합된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비슷한 논리가 체첸 용의자를 민족 출신을 사유로 학대한 *Antayev and Others v. Russia*, 2014 사건에도 적용되었다. *Lingurar v. Romania* [위원회], 2019 사건에서, 당국이 경찰의 급습을 지휘하고 정당화했던 방식을 보면 경찰은 청구인들이 로마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예상하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민족 프로파일링으로 인해 협약 제3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이 실제적 측면이라고 판단하였다.

266. *Aghdgomelashvili and Japaridze v. Georgia*, 2020 사건에서 경찰은 LGBTI 비정부기구의 건물을 수색하였다. 해당 비정부기구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경찰은 모욕과 협박을 내뱉으며 혐오 발언에 이르기까지 점점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더해 청구인들과 그들의 동료 중 일부는 명백한 사유나 공식 기록도 없이 압수 수색을 당했다. 재판소는 제3조와 결합된 제14조의 실제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 모두에서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수색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전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동성애 혐오 및/또는 성전환 혐오에서 비롯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는 양립할 수 없는 공포, 고통 및 불안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2. 절차적 측면

267. *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사건 이후 재판소가 다수의 사건에서 제14조와 결합하여 해석된 제2조 또는 제3조의 절차적 측면에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차별적 폭력 피해자가 학대받거나 사망하게 된 원인인 차별적 동기를 국내 당국이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Bekos and Koutropoulos v. Greece*, 2005; *Turan Cakir v. Belgium*, 2009; *Abdu v. Bulgaria*, 2014; *Angelova and Iliev v. Bulgaria*, 2007; *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3;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2007; *Virabyan v. Armenia*, 2012; *Bălșan v. Romania*, 2017; *Talpis v. Italy*, 2017; *Škorjanec v. Croatia*, 2017; *Adzhigitova and Others v. Russia*, 2021).

268. 차별적 태도와 폭력 행위 간 연결고리가 있는지 조사할 당국의 의무는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발생하는 절차적 의무의 일면이지만, 제14조에 따른 책임에도 묵시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61; *Bekos and Koutropoulos v. Greece*, 2005, § 70). 제14조와 실제적 조항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차별적 폭력 문제는 두 조항 중 하나만 적용되어 나머지 한 조항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조항 모두에서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제기된 혐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269. 차별적 태도가 폭력 행위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 무엇보다도 공식 조사는 열의를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차별적 증오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차별적 폭력 위협으로부터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당국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60).

270. 이러한 점에서, 국가 당국은 폭력 사건, 특히 국가 대리인 또는 민간인이 저지른 사망 사건을 조사할 때 차별적 동기를 밝히고 차별적 증오나 편견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야 할 추가적인 의무가 있다(*Ognyanova and Choban v. Bulgaria*, 2006, § 145; *Turan Cakir v. Belgium*, 2009, § 77; *Abdu v. Bulgaria*, 2014, § 44; *Angelova and Iliev v. Bulgaria*, 2007, § 115; *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3, § 85;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2007, § 140; *Virabyan v. Armenia*, 2012, § 218). 차별적 동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차별이 유발한 폭력 및 잔인성을 차별적 함의가 전혀 없는 사건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기본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일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협약 제14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60; *Stoica v. Romania*, 2008, § 119; *Virabyan v. Armenia*, 2012, § 218; *Šečić v. Croatia*, 2007, § 67).

271. 물론 차별적 동기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폭력 행위에 차별적 함의가 있는지 조사하는 피청구국의 의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이지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60; *Bekos and Koutropoulos v. Greece*, 2005, § 69; *Stoica v. Romania*, 2008, § 119). 당국은 폭력을 통한 차별의 징후가 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사실 관계를 누락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확보하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모든 실질적 수단을 모색하며, 충분히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황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60; *Bekos and Koutropoulos v. Greece*, 2005, § 69; *Ognyanova and Choban v. Bulgaria*, 2006, § 145).

272.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이 두 명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장교에게

해외에서 부과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형 집행은 고사하고 영웅으로 미화되어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오자마자 진급 및 혜택 수령) 피해자들의 민족적 출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사하도록 요청받았다. 재판소가 보기에 청구인들은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장교에게 내린 조치로 인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실제로 그의 극도로 잔인한 증오 범죄가 미화되었다는 납득할 만큼 일응의 증거가 확실한 주장을 제시할 정도로 강력하고 명확하며 일관된 추론을 제시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아르메니아 민족 출신과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인종적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 추정을 반증하지 못했으며, 재판소는 협약 제14조의 절차적 측면과 결합된 제14조의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273. 재판소는 개인이 인종적 특성으로 인한 경찰 신원확인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제8조의 범위에 속하면 당국이 그 존재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종차별적 태도와 국가 대리인 행위 사이의 관련 가능성은 제8조와 연관된 제14조에 따른 책임에 내재된 것으로 보았다.

H. 사법 접근

274. 협약에 따라 사법 접근은 제6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3조(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의 맥락에서 보장된다. 재판소는 제6조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른 사법 접근 차별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Sâmbata Bihor Greek Catholic Parish v. Romania*, 2010; *Mizzi v. Malta*, 2006).

275. 이 문제에 대한 판례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제14조에 따른 요보호 사유를 근거로 결정을 내릴 때 사법 접근에서 차별에 해당하는 대우의 차이를 발견한 바 있다. *Schuler-Zraggen v. Switzerland*, 1993 사건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때 일을 포기했다는 단순한 추정에 근거하여 실업 급여 지급을 거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내 법원은 청구인이 건강 문제가 없었더라도 일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재판소는 성별을 사유로 한 대우의 차이를 두는 국내 법원의 논리를 검토하였다. *Paraskeva Todorova v. Bulgaria*, 2010 사건에서 불가리아 법원은 로마족 출신 피고인에 대한 집행 유예가 그가소수 민족에 속해있어 집행유예가 유죄판결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그러한 양형은 일반 억제와 특별 억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형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다(§ 38). 재판소는 청구인의 민족 출신에 근거한 차별로 판단하였다.

276.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2004 사건은 동료 로마족이 살해당하고 살던 곳이 파괴인 로마족 마을 주민이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이 반복한 차별적 발언과 비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민족성이 국내 소송의 기간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듯이 보이는 바를 살펴보고, 제6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277. *Anakomba Yula v. Belgium*, 2009 사건에서 청구은 벨기에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1년의 기한 내에 자녀의 친자 관계를 다룰 목적으로 받는 법률 지원을 거부당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체류 허가 갱신을 위한 절차를 밟은 상태로, 친자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국내법이 규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갈 위험을 무릅쓰고 갱신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6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I.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

278. 재판소는 판례에서 민족성을 사유로 집을 파괴하고 훼손한 사건에서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 관련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Burlya and Others v. Ukraine*, 2018;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2005). 두 사건 모두에서 당국은 반로마족 정서에서 비롯된 마을 공격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보호하지 못하였다.

279. *Paketova and Others v. Bulgaria*, 2022,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집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당국은 인종에 기반한 적대감과 불관용이 있는 환경에서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를 거부했다.

280. *Buckley v. the United Kingdom*, 1996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이동 주택을 설치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허가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거부가 근거로 된 국내법은 자신이 로마족 출신이라는 근거한 차별한다고 주장하였다. 제8조 하에 재판소는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가 캐러밴 같은 이동식 주택도 심지어 불법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60).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이 전통적인 집시 생활 방식을 따르려고 시도하여 언제라도 유죄가 되거나 그 어떤 해로운 대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을 차별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281. 재판소는 사망한 파트너의 임차권 승계권도 제8조의 의미 내에서 청구인의 “가정”에 대한 존중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Karner v. Austria*, 2003, § 33; *Kozak v. Poland*, 2010, § 84). 두 사건 모두 청구인들은 동성애자로서 동반자가 사망한 후 임차권 승계권을 거부당했으며, 재판소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인정하였다.

J. 재산 사안

282. 제1의정서 제1조(재산의 보호)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에 관한 재판소의 판례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당 및 연금과 같은 일부 형태의 사회 보장은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의정서 제1조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²⁴ 재판소는 그 외 다양한 상황도 검토하였다.

283.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라 자녀의 상속권(*Mazurek v. France*, 2000; *Fabris v. France* [GC], 2013), 배우자의 상속권(*Molla Sali v. Greece* [GC], 2018) 및 유족 연금 수급권(*Aldeguer Tomás v. Spain*, 2016) 관련 사건을 검토하였다. *Aldeguer Tomás v. Spain*, 2016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실상의 동성 결합의 유족으로 파트너 사망 후 유족 연금이 거절되어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을 받았다고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4조의 적용 가능성을 분명히 하였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284. *Saumier v. France*, 2017 사건에서 청구인은 직업병으로 인해 중증 장애를 갖게 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4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소는 쟁점이 된 국내법이 손해가 발생하는 즉시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법에 해당하며, 이러한 성격의 청구권은 “자산을 구성”하므로 제1의정서 제1조(§§ 43–50)의 첫 문장의 의미 내에서 “재산”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법적으로 종속된 계약 관계라는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유사하거나 비교할 만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간 대우의 차이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285. *Anderlecht Christian Assembly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Belgium*, 2022 사건에서, 청구인 단체는 비인정 종교라는 이유로 더 이상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재판소는 (재산세 면제 청구를 구분하는 근거로서) 종교 신앙을 인정하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본 사건에서 그러한 인정에 관한 규정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286. 판례에서 재판소는 다음도 제1의정서 제1조에 연결하였다.

24. 아래 “사회적 권리” 참조.

-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부동산 구입 시 세금 감면 자격(*Guberina v. Croatia*, 2016)
-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사냥 협회의 회원이 되어 자신의 소유지에서 사냥을 허용할 의무 부과(*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민간 투자자의 동의 없이 국가 부채를 재조정하는 관점에서 채권의 명목 가치 감소(*Mamatas and Others v. Greece*, 2016)
- 밴드 클럽으로 임대된 관리 부동산의 임대인을 보호된 임대 계약의 해지를 허용하는 법률에서 제외(*Bradshaw and Others v. Malta*, 2018)
- 장애 수당 제공 시 군인 수혜자와 다르게 민간인 차별 주장(*Popović and Others v. Serbia*, 2020)

K. 자유의 박탈

287. 재판소는 판례에서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른 차별 사유에 기반한 자유의 임의 박탈로부터 자유로울 권리(*Aleksandr Aleksandrov v. Russia*, 2018; *Rangelov v. Germany*, 2012; *Clift v. the United Kingdom*, 2010) 및 제3조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른 구금 중 차별 사유에 기반한 모욕적 또는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한다(*Martzaklis and Others v. Greece*, 2015; *X v. Turkey*, 2012).

288. *Aleksandr Aleksandrov v. Russia*,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모스크바 법원에서 보호관찰 같은 비구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오로지 청구인이 모스크바에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감 명령을 내렸다. 청구인은 자신의 거주지를 근거로 제5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대우의 차이에 정당한 목적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이 없으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89.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의 외국 국적(*Rangelov v. Germany*, 2012) 또는 형기에 따른 조기 석방 절차 요건의 차이(*Clift v. the United Kingdom*, 2010)로 인해 예방적 구금 조건의 완화를 거부한 사건에서 제5조와 결합된 제14조를 위반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90. *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2017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성인 남성이었다. 청구인들은 동일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없는 여성, 청소년, 노인 범죄자들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우받았다고 제소하였다. 원칙적으로 적절한 양형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지만, 재판소는 제14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 범주의 범죄자에 대해 종신형을 면제하는 국내 법률이 제5조의 적용 범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 특정 사건에서 연령 또는 성별을 사유로 한 제14조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년범에 대한 종신형 면제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모든 체약국의 법률 체계에 공통된 접근 방식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그 목적은 비행소년의 사회복귀 촉진이 분명하다고 판결하였다. 여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교도소 환경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 학대 및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임신 및 모성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여성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종신형을 면제해야 할 공익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291. 재판소는 여러 사건에서 수감자 처우가 제3조와 결합된 제14조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Martzaklis and Others v. Greece*, 2015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HIV 양성으로 교도소 정신병동에서 적절한 치료 없이 열악한 신체적, 위생적 조건에 수감되었다. 재판소는 수감자들이 HIV 양성이고 에이즈가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수용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협약 제14조와 결합된 제3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반대로 *Dikaïou and Others v. Greece* 사건에서 재판소는 HIV 양성인 수감자들이 일반 교도소 내 한 감방에 함께 수용된 경우 협약 제3조와 결합된 제14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X v. Turkey*, 2012 사건에서 청구인은 수감된 동성애자로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8개월 이상 완전히 격리된 채 구금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체적 안녕을 보호하는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청구인이 수감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된 주된 이유라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해당 수단을 취한 주된 이유는 청구인의 동성애였다. 그 결과 재판소는 청구인이 성적 지향을 사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92. 재판소 판례는 정치적(*Virabyan v. Armenia*, 2012) 또는 인종적(*Bekos and Koutropoulos v. Greece*, 2005) 동기로 구금자를 확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밝히고 있다.

293.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 재판소는 실체적 조항에 따라 상황을 심리하고 협약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D.G. v. Ireland*, 2002 사건은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교도 시설에 미성년자를 구금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제5조 위반을 발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상황을 다른 미성년자의 상황과 비교하는 한, 협약 제14조에 따라 별도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Stasi v. France*, 2011 사건에서 청구인은 동성애를 이유로 감옥에서 학대받았고 당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고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이 구금 중 신체적 위해보부터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였으며, 제14조에 다른 청구인의 주장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제3조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협약 제44조의 의미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됩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의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뒤 이은 대재판부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3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인용된 사건에 대한 언어별 번역본은 모두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A and B v. Georgia](#), no. 73975/16, 10 February 2022
[A.E. v. Bulgaria](#), no. 53891/20, 23 May 2023
[A.D.T. v. the United Kingdom](#), no. 35765/97, ECHR 2000-IX
[A.H. and Others v. Russia](#), nos. 6033/13 and 15 others, 17 January 2017
[A.M. and Others v. Russia](#), no. 47220/19, 6 July 2021
[Abdu v. Bulgaria](#), no. 26827/08, 11 March 2014
[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28 May 1985, Series A no. 94
[Acar and Others v. Turkey](#) (dec.), nos. 26878/07 and 32446/07, 12 December 2017
[Adalı v. Turkey](#), no. 38187/97, 31 March 2005
[Adam v. Slovakia](#), no. 68066/12, 26 July 2016
[Ádám and Others v. Romania](#), nos. 81114/17 and 5 others, 13 October 2020
[Adzhigitova and Others v. Russia](#), nos. 40165/07 and 2593/08, 22 June 2021
[Alatulkila and Others v. Finland](#), no. 33538/96, 28 July 2005
[Alboize-Barthes and Alboize-Montezume v. France](#) (dec.), no. 44421/04, 21 October 2008
[Aldeguer Tomás v. Spain](#), no. 35214/09, 14 June 2016
[Aleksandr Aleksandrov v. Russia](#), no. 14431/06, 27 March 2018
[Aleksyev and Others v. Russia](#), nos. 14988/09 and 50 others, 27 November 2018
[Alexandru Enache v. Romania](#), no. 16986/12, 3 October 2017
[Alujer Fernández and Caballero García v. Spain](#) (dec.), no. 53072/99, ECHR 2001-VI

Anakomba Yula v. Belgium, no. 45413/07, 10 March 2009
Ancient Baltic religious association "Romuva" v. Lithuania, no. 48329/19, 8 June 2021
Anderlecht Christian Assembly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Belgium, no. 20165/20, 5 April 2022
Andrejeva v. Latvia [GC], no. 55707/00, ECHR 2009
Andrle v. the Czech Republic, no. 6268/08, 17 February 2011
Angelova and Iliev v. Bulgaria, no. 55523/00, 26 July 2007
Angelova v. Bulgaria, no. 38361/97, ECHR 2002-IV
Antayev and Others v. Russia, no. 37966/07, 3 July 2014
Arnar Helgi Lárusson v. Iceland, no. 23077/19, 31 May 2022
Association ACCEPT and Others v. Romania, no. 19237/16, 1 June 2021
Association "Andecha Astur" v. Spain, no. 34184/96, Commission decision of 7 July 1997, Decisions and Reports 90
Aziz v. Cyprus, no. 69949/01, ECHR 2004-V

—B—

B.B. v. the United Kingdom, no. 53760/00, 10 February 2004
B.S. v. Spain, no. 47159/08, 24 July 2012
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no. 1543/06, 3 May 2007
Bah v. the United Kingdom, no. 56328/07, ECHR 2011
Bakirdzi and E.C. v. Hungary, nos. 49636/14 and 65678/14, 10 November 2022
Bălşan v. Romania, no. 49645/09, 23 May 2017
Baralija v. Bosnia and Herzegovina, no. 30100/18, 29 October 2019
Barrow v. the United Kingdom, no. 42735/02, 22 August 2006
Basu v. Germany, no. 215/19, 18 October 2022
Bayev and Others v. Russia, nos. 67667/09 and 2 others, 20 June 2017
Beck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s. 48535/99 and 2 others, 22 October 2002
Beeckman and Others v. Belgium (dec.), no. 34952/07, 18 September 2018
Beeler v. Switzerland [GC], no. 78630/12, 11 October 2022
Behar and Gutman v. Bulgaria, no. 29335/13, 16 February 2021
Beian v. Romania (no. 1), no. 30658/05, ECHR 2007-V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no. 41288/15, 14 January 2020
Bekos and Koutropoulos v. Greece, no. 15250/02, ECHR 2005-XIII
Belli and Arquier-Martinez v. Switzerland, no. 65550/13, 11 December 2018
Biao v. Denmark [GC], no. 38590/10, 24 May 2016
Bigaeva v. Greece, no. 26713/05, 28 May 2009
Blackgrove v. the United Kingdom, no. 2895/07, 28 April 2009
Botta v. Italy (dec.), no. 21439/93, 24 February 1998
Bouamar v. Belgium, 29 February 1988, Series A no. 129
Brauer v. Germany, no. 3545/04, 28 May 2009
British Gurkha Welfare Societ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44818/11, 15 September 2016
Buckley v. the United Kingdom, 25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Budinova and Chaprazov v. Bulgaria, no. 12567/13, 16 February 2021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no. 13378/05, ECHR 2008
Burghartz v. Switzerland, 22 February 1994, Series A no. 280-B
Burlya and Others v. Ukraine, no. 3289/10, 6 November 2018
Bradshaw and Others v. Malta, no. 37121/15, 23 October 2018

—C—

Caamaño Valle v. Spain, no. 43564/17, 11 May 2021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42184/05, ECHR 2010
Carvalho Pinto de Sousa Morais v. Portugal, no.17484/15, 25 July 2017
Case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the laws on the use of languages in education in Belgium” v. Belgium (merits), 23 July 1968, Series A no. 6
Çam v. Turkey, no. 51500/08, 23 February 2016
Cegolea v. Romania, no. 25560/13, 24 March 2020
Cernea v. Romania, no. 43609/10, 27 February 2018
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no. 27417/95, ECHR 2000-VII
Chabauty v. France [GC], no. 57412/08, 4 October 2012
Chaldeyev v. Russia, no. 33172/16, 28 May 2019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no. 40183/07, 9 June 2016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nos. 25088/94 and 2 others, ECHR 1999-III
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8957/95, ECHR 2002-VI
Church of Scientology Moscow v. Russia, no. 18147/02, 5 April 2007
Cînta v. Romania, no. 3891/19, 18 February 2020
Clift v. the United Kingdom, no. 7205/07, 13 July 2010
Cross v. the United Kingdom, no. 62776/00, 9 October 2007
Cusan and Fazzo v. Italy, no. 77/07, 7 January 2014

—D—

D. v. France, no. 11288/18, 16 July 2020
D.G. v. Ireland, no. 39474/98, ECHR 2002-III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no. 57325/00, ECHR 2007-IV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no. 67336/01, ECHR 2009
Danis and Association of Ethnic Turks v. Romania, no. 16632/09, 21 April 2015
Darby v. Sweden, 23 October 1990, Series A no. 187
Deaconu v. Romania [Committee] no. 66299/12, 29 January 2019
De Jong, Baljet and Van den Brink v. the Netherlands, 22 May 1984, Series A no. 77
Di Trizio v. Switzerland, no. 7186/09, 2 February 2016
Dikaiou and Others v. Greece, no. 77457/13, 16 July 2020
Dobrowolski and Others v. Poland (dec.), nos. 45651/11 and 10 others, 13 March 2018
Dudgeon v. the United Kingdom, 22 October 1981, Series A no. 45

—E—

E.B. v. France [GC], no. 43546/02, 22 January 2008
East African Asians v. the United Kingdom, nos. 4403/70 and 30 others, Commission’s report of 14 December 1973, Decisions and Reports 78
Ebrahimian v. France, no. 64846/11, ECHR 2015
Ēcis v. Latvia, no. 12879/09, 10 January 2019
Emel Boyraz v. Turkey, no. 61960/08, 2 December 2014
Elmazov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nos. 11811/20 and 13550/20, 13 December 2022
Engel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8 June 1976, Series A no. 22
Enver Şahin v. Turkey, no. 23065/12, 30 January 2018
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3564/11, 28 May 2013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no. 6339/05, ECHR 2007-I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s. 48420/10 and 3 others, ECHR 2013

—F—

Fábián v. Hungary [GC], no. 78117/13, 5 September 2017

Fabris v. France [GC], no. 16574/08, ECHR 2013

Fedorchenko and Lozenko v. Ukraine, no. 387/03, 20 September 2012

Frantzeskakis and Others v. Greece (dec.), nos. 57275/17 and 14 others, 12 February 2019

Fretté v. France, no. 36515/97, ECHR 2002-I

Fryske Nasjonale Partij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no. 11100/84, Commission decision of 12 December 1985, Decisions and Reports 45

—G—

G.N. and Others v. Italy, no. 43134/05, 1 December 2009

García Mateos v. Spain, no. 38285/09, 19 February 2013

Gas and Dubois v. France, no. 25951/07, ECHR 2012

Gaygusuz v. Austria, 1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Gellérthegyi and Others v. Hungary (dec.), nos. 78135/13 and 429/14, 6 March 2018

Genderdoc-M v. Moldova, no. 9106/06, 12 June 2012

Genovese v. Malta, no. 53124/09, 11 October 2011

Georgian Labour Party v. Georgia, no. 9103/04, ECHR 2008

Gerger v. Turkey [GC], no. 24919/94, 8 July 1999

Glaisen v. Switzerland (dec.), no. 40477/13, 25 June 2019

Glor v. Switzerland, no. 13444/04, ECHR 2009

G.M.B. and K.M. v. Switzerland (dec.), no. 36797/97, 27 September 2001

Gouri v. France (dec.), no. 41069/11, 23 March 2017

Grande Oriente d'Italia di Palazzo Giustiniani v. Italy (no. 2), no. 26740/02, 31 May 2007

Granos Organicos Nacionales S.A. v. Germany, no. 19508/07, 22 March 2012

Graziani-Weiss v. Austria, no. 31950/06, 18 October 2011

Gruba and Others v. Russia, nos. 66180/09 and 3 others, 6 July 2021

Grzelak v. Poland, no. 7710/02, 15 June 2010

Guberina v. Croatia, no. 23682/13, 22 March 2016

—H—

Halime Kılıç v. Turkey, no. 63034/11, 28 June 2016

Hämäläinen v. Finland [GC], no. 37359/09, ECHR 2014

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7 December 1976, Series A no. 24

Hasan and Chaush v. Bulgaria [GC], no. 30985/96, ECHR 2000-XI

Hode and Abdi v. the United Kingdom, no. 22341/09, 6 November 2012

Hoffmann v. Austria, 23 June 1993, Series A no. 255-C

Hoogendijk v. the Netherlands (dec.), no. 58641/00, 6 January 2005

Horváth and Kiss v. Hungary, no. 11146/11, 29 January 2013

Hugh Jordan v. the United Kingdom, no. 24746/94, 4 May 2001

Hulea v. Romania, no. 33411/05, 2 October 2012

— I —

I.B. v. Greece, no. 552/10, ECHR 2013
I. v. the United Kingdom [GC], no. 25680/94, 11 July 2002
Ibrogimov v. Russia, no. 32248/12, 15 May 2018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no. 73235/12, 12 May 2015
Igors Dmitrijevs v. Latvia, no. 61638/00, 30 November 2006
Isop v. Austria, no. 808/60, Commission decision of 3 March 1962, Collection 8
Inze v. Austria, 28 October 1987, Series A no. 126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no. 62649/10, 26 April 2016

— J —

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nos. 32949/17 and 34614/17, 24 October 2019
J.M. v. the United Kingdom, no. 37060/06, 28 September 2010
Jeunesse v. the Netherlands [GC], no. 12738/10, 3 October 2014
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18 December 1986, Series A no. 112
Jurčić v. Croatia, no. 54711/15, 4 February 2021

— K —

Kafkaris v. Cyprus [GC], no. 21906/04, ECHR 2008
Karlheinz Schmidt v. Germany, 18 July 1994, Series A no. 291-B
Karner v. Austria, no. 40016/98, ECHR 2003-IX
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nos. 60367/08 and 961/11, 24 January 2017
Kiyutin v. Russia, no. 2700/10, ECHR 2011
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no. 60669/00, ECHR 2004-IX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no. 30078/06, ECHR 2012
Korosidou v. Greece, no. 9957/08, 10 February 2011
Köse and Others v. Turkey (dec.), no. 26625/02, ECHR 2006-II
Koua Poirrez v. France, no. 40892/98, ECHR 2003-X
*Kovače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no. 43651/22, 29 August 2023
Kozak v. Poland, no. 13102/02, 2 March 2010
Kreyndlin and Others v. Russia, no. 33470/18, 31 January 2023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no. 26828/06, ECHR 2012
Kurski v. Poland, no. 26115/10, 5 July 2016

— L —

L. v. Lithuania, no. 27527/03, ECHR 2007-IV
L. and v. v. Austria, nos. 39392/98 and 39829/98, ECHR 2003-I
L.F.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9839/21, 25 May 2022
Laduna v. Slovakia, no. 31827/02, ECHR 2011
Landi v. Italy, no. 10929/19, 7 April 2022
Larkos v. Cyprus [GC], no. 29515/95, ECHR 1999-I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nos. 57818/09 and 14 others, 7 February 2017
Lavida and Others v. Greece, no. 7973/10, 30 May 2013
Lindsay v. the United Kingdom, no. 11089/84, Commission decision of 11 November 1986, DR 49
Lingurar v. Romania [Committee], no. 48474/14, 16 April 2019

Luczak v. Poland, no. 77782/01, 27 November 2007

Lustig-Prean and Beckett v. the United Kingdom, nos. 31417/96 and 32377/96, 27 September 1999

—M—

M.C. and A.C. v. Romania, no. 12060/12, 12 April 2016

M.G. v. Turkey, no. 646/10, 22 March 2016

M.T. and Others v. Sweden, no. 22105/18, 20 October 2022

Macalin Moxamed Sed Dahir v. Switzerland (dec.), no. 12209/10, 15 September 2015

Maggio and Others v. Italy, nos. 46286/09 and 4 others, 31 May 2011

Makhashev v. Russia, no. 20546/07, 31 July 2012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no. 17247/13, 26 May 2020

Mamatas and Others v. Greece, nos. 63066/14 and 2 others, 21 July 2016

Manoussakis and Others v. Greece, 2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Marckx v. Belgium, 13 June 1979, Series A no. 31

Martzaklis and Others v. Greece, no. 20378/13, 9 July 2015

Mata Estevez v. Spain (dec.), no. 56501/00, ECHR 2001-VI

Maymulakhin and Markiv v. Ukraine, no. 75135/14, 1 June 2023

Mazurek v. France, no. 34406/97, ECHR 2000-II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no. 71156/01, 3 May 2007

Men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7916/99, ECHR 2003-V

Merger and Cros v. France, no. 68864/01, 22 December 2004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no. 45701/99, ECHR 2001-XII

Milanović v. Serbia, no. 44614/07, 14 December 2010

Milivojević v. Serbia (dec.), no. 11944/16, 5 July 2022

Mizzi v. Malta, no. 26111/02, ECHR 2006-I

Moraru v. Romania, no. 64480/19, 8 November 2022

Moraru and Marin v. Romania, nos. 53282/18 and 31428/20, 20 December 2022

Mudric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74839/10, 16 July 2013

Muhammad v. Spain, no. 34085/17, 18 October 2022

Muñoz Díaz v. Spain, no. 49151/07, ECHR 2009

Modinos v. Cyprus, 22 April 1993, Series A no. 259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nos. 41138/98 and 64320/01, ECHR 2005-VII

Molla Sali v. Greece [GC], no. 20452/14, 19 December 2018

Moscow Branch of the Salvation Army v. Russia, no. 72881/01, ECHR 2006-XI

—N—

N.B. v. Slovakia, no. 29518/10, 12 June 2012

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nos. 43577/98 and 43579/98, ECHR 2005-VII

Naidin v. Romania, no. 38162/07, 21 October 2014

Napotnik v. Romania, no. 33139/13, 20 October 2020

National & Provincial Building Society,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and Yorkshire Building Society v. the United Kingdom, 23 Octo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

National union of Belgian police v. Belgium, 27 October 1975, Series A no. 19

Negovanović and Others v. Serbia, nos. 29907/16 and 3 others, 25 January 2022

Nepomnyashchiy and Others v. Russia, nos. 39954/09 and 3465/17, 30 May 2023

Norris v. Ireland, 26 October 1988, Series A no. 142

Novruk and Others v. Russia, nos. 31039/11 and 4 others, 15 March 2016

Nurcan Bayraktar v. Türkiye, no. 27094/20, 27 June 2023
Nylund v. Finland (dec.), no. 27110/95, ECHR 1999-VI

—O—

O'Donoghu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34848/07, ECHR 2010
Oganezova v. Armenia, nos. 71367/12 and 72961/12, 17 May 2022
Ognyanova and Choban v. Bulgaria, no. 46317/99, 23 February 2006
Okpiz v. Germany, no. 59140/00, 25 October 2005
Oliari and Others v. Italy, nos. 18766/11 and 36030/11, 21 July 2015
Opuz v. Turkey, no. 33401/02, ECHR 2009
Oran v. Turkey, nos. 28881/07 and 37920/07, 15 April 2014
Orlandi and Others v. Italy, nos. 26431/12 and 3 others, 14 December 2017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no. 15766/03, ECHR 2010
Özgürlük ve Dayanışma Partisi (ÖDP) v. Turkey, no. 7819/03, ECHR 2012

—P—

P.B. and J.S. v. Austria, no. 18984/02, 22 July 2010
P.C. v. Ireland, no. 26922/19, 1 September 2022
P.W. v. Austria, no. 10425/19, 21 June 2022
Pahor v. Italy, no. 19927/92, Commission decision of 29 June 1994
Pajić v. Croatia, no. 68453/13, 23 February 2016
Paketova and Others v. Bulgaria, nos. 17808/19 and 36972/19, 4 October 2022
Paparrigopoulos v. Greece, no. 61657/16, 30 June 2022
Paraskeva Todorova v. Bulgaria, no. 37193/07, 25 March 2010
Paun Jovanović v. Serbia, no. 41394/15, 7 February 2023
Perkins and R. v. the United Kingdom, nos. 43208/98 and 44875/98, 22 October 2002
Peterk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21990/08, 4 May 2010
Petrov v. Bulgaria, no. 15197/02, 22 May 2008
Petrovic v. Austria, 27 March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Pichkur v. Ukraine, no. 10441/06, 7 November 2013
Pilav v. Bosnia and Herzegovina, no. 41939/07, 9 June 2016
Pini and Others v. Romania, nos. 78028/01 and 78030/01, ECHR 2004-V
Pinkas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no. 8701/21, 4 October 2022
Pla and Puncernau v. Andorra, no. 69498/01, ECHR 2004-VIII
Ponomaryovi v. Bulgaria, no. 5335/05, ECHR 2011
Popović and Others v. Serbia, no. 26944/13 et al., 30 June 2020
Pretty v. the United Kingdom, no. 2346/02, ECHR 2002-III

—R—

R.P.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38245/08, 9 October 2012
Rangelov v. Germany, no. 5123/07, 22 March 2012
Rasmussen v. Denmark, 28 November 1984, Series A no. 87
Rasmussen v. Poland, no. 38886/05, 28 April 2009
Ratzenböck and Seydl v. Austria, no. 28475/12, 26 October 2017
Redfearn v. the United Kingdom, no. 47335/06, 6 November 2012
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no. 40825/98, 31 July 2008

Runkee and White v. the United Kingdom, nos. 42949/98 and 53134/99, 10 May 2007

—S—

S.A.S. v. France [GC], no. 43835/11, ECHR 2014
S.L. v. Austria, no. 45330/99, ECHR 2003-I
Sabalić v. Croatia, no. 50231/13, 14 January 2021
Sahin v. Germany [GC], no. 30943/96, ECHR 2003-VIII
Salgueiro da Silva Mouta v. Portugal, no. 33290/96, ECHR 1999-IX
Salman v. Turkey [GC], no. 21986/93, ECHR 2000-VII
Sâmbata Bihor Greek Catholic Parish v. Romania, no. 48107/99, 12 January 2010
Sampanis and Others v. Greece, no. 32526/05, 5 June 2008
Santos Couto v. Portugal, no. 31874/07, 21 September 2010
Saumier v. France, no. 74734/14, 12 January 2017
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no. 7798/08, 9 December 2010
Savickis and Others v. Latvia [GC], no. 49270/11, 9 June 2022
Schalk and Kopf v. Austria, no. 30141/04, ECHR 2010
Schlumpf v. Switzerland, no. 29002/06, 8 January 2009
Schuler-Zraggen v. Switzerland, 24 June 1993, Series A no. 263
Schwizgebel v. Switzerland, no. 25762/07, ECHR 2010
Šečić v. Croatia, no. 40116/02, 31 May 2007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nos. 27996/06 and 34836/06, ECHR 2009
*Semenya v. Switzerland**, no. 10934/21, 11 July 2023
Şerife Yiğit v. Turkey [GC], no. 3976/05, 2 November 2010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nos. 55480/00 and 59330/00, ECHR 2004-VIII
Škorjanec v. Croatia, no. 25536/14, 28 March 2017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nos. 33985/96 and 33986/96, ECHR 1999-VI
Soare and Others v. Romania, no. 24329/02, 22 February 2011
Sommerfeld v. Germany [GC], no. 31871/96, ECHR 2003-VIII
Sousa Goucha v. Portugal, no. 70434/12, 22 March 2016
Springett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s. 34726/04 and 2 others, 27 April 2010
Stafford v. the United Kingdom [GC], no. 46295/99, ECHR 2002-IV
Stasi v. France, no. 25001/07, 20 October 2011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5731/01 and 65900/01, ECHR 2006-VI
Stoica v. Romania, no. 42722/02, 4 March 2008
Stoyanova v. Bulgaria, no. 56070/18, 14 June 2022
Străin and Others v. Romania, no. 57001/00, ECHR 2005-VII
Strøbye and Rosenlind v. Denmark, nos. 25802/18 and 27338/18, 2 February 2021
Stummer v. Austria [GC], no. 37452/02, ECHR 2011
Swedish Engine Drivers’ Union v. Sweden, 6 February 1976, Series A no. 20
Szolcsán v. Hungary, no. 24408/16, 30 March 2023

—T—

T.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724/94, 16 December 1999
T.C. v. Italy, no. 54032/18, 19 May 2022
T.M. and C.M.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26608/11, 28 January 2014
Taddeucci and McCall v. Italy, no. 51362/09, 30 June 2016
Talpis v. Italy, no. 41237/14, 2 March 2017
Terna v. Italy, no. 21052/18, 14 January 2021

Thlimmenos v. Greece [GC], no. 34369/97, ECHR 2000-IV
Timishev v. Russia, nos. 55762/00 and 55974/00, ECHR 2005-XII
Tkheldze v. Georgia, no. 33056/17, 8 July 2021
Toplak and Mrak v. Slovenia, nos. 34591/19 and 42545/19, 26 October 2021
Turan Cakir v. Belgium, no. 44256/06, 10 March 2009

—U—

Ünal Tekeli v. Turkey, no. 29865/96, ECHR 2004-X

—V—

V.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888/94, ECHR 1999-IX
V.C. v. Slovakia, no. 18968/07, ECHR 2011
Valkov and Others v. Bulgaria, nos. 2033/04 and 8 others, 25 October 2011
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nos. 29381/09 and 32684/09, ECHR 2013
Van der Mussele v. Belgium, 23 November 1983, Series A no. 70
Van Kück v. Germany, no. 35968/97, ECHR 2003-VII
Varnas v. Lithuania, no. 42615/06, 9 July 2013
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no. 1813/07, 9 February 2012
Vermeire v. Belgium, 29 November 1991, Series A no. 214-C
VgT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no. 24699/94, ECHR 2001-VI
Virabyan v. Armenia, no. 40094/05, 2 October 2012
Vojnity v. Hungary, no. 29617/07, 12 February 2013
Volodina v. Russia, no. 41261/17, 9 July 2019
Vool and Toomik v. Estonia, nos. 7613/18 and 12222/18, 29 March 2022
Vrountou v. Cyprus, no. 33631/06, 13 October 2015

—W—

Weller v. Hungary, no. 44399/05, 31 March 2009
Willis v. the United Kingdom, no. 36042/97, ECHR 2002-IV
Wolter and Sarfert v. Germany, nos. 59752/13 and 66277/13, 23 March 2017
Wysowska v. Poland (dec.), no. 12792/13, 23 January 2018

—X—

X v. Turkey, no. 24626/09, 9 October 2012
X and Others v. Albania, nos. 73548/17 and 45521/19, 31 May 2022
X and Others v. Austria [GC], no. 19010/07, ECHR 2013
*X and others v. Ireland**, nos. 23851/20 and 24360/20, 22 June 2023

—Y—

Y and Others v Bulgaria, no. 9077/18, 22 March 2022
Y.Y. v. Turkey, no. 14793/08, ECHR 2015
Yocheva and Ganeva v. Bulgaria, nos. 18592/15 and 43863/15, 11 May 2021

—Z—

[Zakharova and Others v. Russia](#), no. 12736/10, 8 March 2022

[Zarb Adami v. Malta](#), no. 17209/02, ECHR 2006-VIII

[Zeggai v. France](#), no. 12456/19, 13 October 2022

[Zehnalová and Zehnal v. the Czech Republic](#) (dec.), no. 38621/97, 14 May 2022

[Zeïbek v. Greece](#), no. 46368/06, 9 July 2009

[Zhdanov and Others v. Russia](#), nos. 12200/08 and 2 others, 16 July 2019

[Žičkus v. Lithuania](#), no. 26652/02, 7 April 2009

[Zornić v. Bosnia and Herzegovina](#), no. 3681/06, 15 July 2014